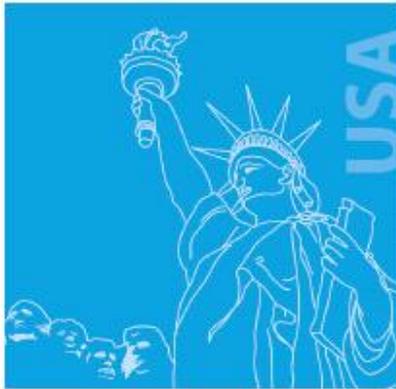


2017년 1분기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제1장 국가별 통관거부사유 분석	1
제2장 중국	6
제1절 수입제도현안	20
제2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23
제3절 대응방안	28
제4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31
제3장 미국	31
제1절 수입제도현안	31
제2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36
제3절 대응방안	40
제4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43
제4장 일본	46
제1절 수입제도현안	46
제2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53
제3절 대응방안	54
제4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55
제5절 참고자료	55
제5장 EU	64
제1절 수입제도현안	64
제2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77
제3절 대응방안	79
제4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80
제6장 기타국	81
제1절 수입제도현안	81
제2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88
제3절 대응방안	90
제4절 참고자료	92

제 1 장

국가별 통관거부사유 분석

국가	구분	주요내용
중국 (68)	라벨링/ 포장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류) 주로 적발된 제품은 과실류로 9건이 확인되었으며 라벨링/포장 적발 건수 가운데 약 26%를 차지함 ○ (문제원인) 중국 식품 규정 GB 7718-2011에 따른 라벨의 중문 표기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포장 표면 면적에 따른 표기 내용 글자 크기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 ○ (최근동향)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 이후 중국 내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개정되고 식품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잘못된 라벨링을 찾아 신고하는 ‘식파라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외국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성분 부적합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류) 주로 적발된 제품은 과자류로 9건이 확인되었으며 성분 부적합 적발 건수 가운데 약 64%를 차지함 ○ (문제원인) 성분 부적합의 세부 원인은 식품첨가물 디소듐타트레이트, 적양배추색소, 딱총나무 열매색소, 카르타민엘로우 등의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됨 ○ (최근동향) 기존의 중국 식품 기준은 한국보다 낮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유럽의 식품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해외 식품 기준에 맞게 기준을 개정하고 식품첨가물 규정도 강화되었음
	위생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주로 적발된 제품은 수산물로, 총 8건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위생 적발 건수 가운데 57%를 차지함. 적발 제품 모두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로 확인됨 ○ (문제원인) 중국 식품 규정 GB/T 21732-2008에 따르면, 과일 및 야채주스의 균락총수 최대 허용치는 저온 과일 야채 음료의 경우 500cfu/ml, 기타 과일야채음료의 경우 100cfu/ml로

국가	구분	주요내용
		<p>허용치 기준이 각각 다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동향) 최근 중국 현지 유명 식품 기업은 과일·야채샐러드 제품의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로 5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음. 이로 인해 한국산 제품도 위생 검사강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출 전 사전 검사 주의가 필요함
	<p>서류 미비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류, 음료류) 적발된 제품은 과자류(4건), 음료류(2건)이 확인됨. 각각의 제품은 전체 서류미비 적발 제품 가운데 약 66%, 33%를 차지함 ○ (문제원인) 중국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따른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필요한 인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최근동향) 중국 내 소비자 안전 의식의 향상과 함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중국 당국이 최근 5년 전부터 통관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허가증과 같은 안전심사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음
<p>미국 (54)</p>	<p>라벨링/포장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스류, 신선 채소류) 주로 적발된 제품은 소스류와 신선 채소류로 라벨링/포장 부적합으로 인해 적발됨 ○ (문제원인) 미국 식품 규정 21 CFR 101.15(C)에 따라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필수 기재 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명시되지 않음 ○ (최근동향)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월 9일 ‘건강한(healthy)’ 식품 정의 재검토를 발표함과 동시에 영양 성분표 및 식품 권장량 규제가 개정되어 2018년 7월까지 미국에 식품 및 음료를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준비 중인 업체는 개정된 규제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성분표는 칼로리 표시 확대, 1인 1회 섭취량(serving size)을 실제 섭취량으로 기재, 천연당과 첨가당 구분, 기타 영양성분 함유량을 비율(%)에서 실제 포함된 양(g)으로 표기토록 함
	<p>성분 부적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농산물) 주로 적발된 제품은 버섯, 잎 및 줄기 채소, 대추 등과 같은 신선 농산물로, 성분 부적합으로 인해 적발됨

국가	구분	주요내용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원인) 미국 식품 규정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에 따라 Section 348에서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최근동향) 미국 정부가 식품 안전성 논란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과 첨가물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임. 또한 자국에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업 보호 및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서류 미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농산물) 적발된 제품 모두 채소류로, 서류 미비로 인해 적발됨 ○ (문제원인) 미국 식품 규정 21 CFR 123.12(d)에 따른 규정 준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품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간주함 ○ (최근동향) 미국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여 식품검사, 선창가 검사, 시료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서류 검토를 통해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될 시, 해당 식품은 FDA 소관 사항에서 제외됨
	기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스류) 4건 중 과채주스 2건이 저산 혹은 산화 식품 등록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관 거부됨 ○ (문제원인)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에 따르면, 저산(低酸)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최근동향) 미국 내 반입되는 식품의 공급을 생물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Bioterrorism Act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12월 12일부로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사전에 음식물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국가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에 따라 산화 식품 및 저산통조림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하는 업체는 반드시 FDA에 회사명, 주소, 가공시설 및 가공방식, 각 시설에서 가공되는 모든 음식의 목록 등을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
일본 (1)	위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압력 가열 살균포장 갈비탕 제품에서 미생물 양성 반응 발생 ○ (문제원인) 후생성 고시 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의거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이 검출되어 통관거부, 폐기처리
유럽 (4)	성분 부적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류) 적발된 제품은 무알콜 음료류로, 미승인 젓당으로 인해 적발됨 ○ (문제원인) 유당의 경우 알레르기를 야기할 수 있어 유럽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성분 기준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됨 ○ (최근동향) 유럽 당국은 알레르기를 야기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라벨링 및 포장에 반드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 무알콜 음료류에 대한 적발 사례로는 헛개나무(Hovenia dulcis) 성분 미승인으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가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적발된 제품은 말린 해초류로, 요오드 검출이 원인임 ○ (문제원인) Regulation (EC) No 396/2005에 따르면 해조물의 요오드 최대허용량은 0.01mg/kg이나, 제품 분석결과 193mg/kg으로 나타남 ○ (최근동향)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방사능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성분이 식품에서 검출되는 것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적발된 제품은 냉동 황새치 슬라이스로, 수은 성분이 기준치 초과됨

국가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원인) Regulation (EC) No 1881/2006에 따르면 황새치의 수은 최대허용량은 1mg/kg으로, 제품 분석결과 1.5mg/kg으로 나타남 ○ (최근동향) EU 집행위원회가 독성물질인 수은에 대한 미나타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잔류성 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범위 등에 대한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p style="text-align: center;">위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신선 농산물 버섯에서 식중독 균종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Listeria monocytogens) 검출 ○ (문제원인) Regulation (EC) No 2073/2005 규정에 따르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는 제품이 시판되기 전 표본 검사에서 검출되면 안 되나, 제품 분석결과 1,100cfu/g이 발견됨 ○ (최근동향)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는 자연환경과 식품 등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적으며 치사율 또한 20~30%를 기록함. 한국산 버섯에서 리스테리아 균 검출로 인해 유럽 유통업체에서 리콜 사태 발생 후 유럽에서는 한국산 버섯류 경계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p style="text-align: center;">대만 (6)</p>	<p style="text-align: center;">성분 부적합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딸기) 신선 딸기는 총 5건이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통관 거부됨 ○ (문제원인) 모두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사유로, 대표적으로 농약 티아클로프리드의 신선 딸기 내 최대 허용치는 0.01ppm이며, 해당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최근동향) 2016년 12월부터 대만 정부가 수입산 한약재 잔류 농약검사 및 중금속 검사를 본격 실시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한층 강화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대표적인 대만 수출용 작물인 딸기, 사과, 배, 배추 등의 검역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제 2 장 중 국

제 1 절

수입제도현안

1. 식품품질 안전을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정보화부 / 발표일 : 2017.01.05

-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서의 식품공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를 발표하여 식품 품질 안전을 위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힘
- 공신부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분석 기술을 통해 식품 이력 추적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공신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 리스크 분석과 제어 포인트 등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실시하고 식품기업의 신용장을 통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힘
-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식 시행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법 실행조항>을 수정하고 식품안전 관련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처리, 식품안전 관련 정보 발표, 식품 전 과정 추적, 수출입 식품안전 감독관리 등의 법규와 규정제도를 제정 또는 수정할 예정임
- 식품안전을 위한 ‘블랙리스트’와 ‘레드리스트’ 제도를 도입함

- ‘블랙리스트’ 기업은 엄중한 징계와 집중 감시 대상이 되며, ‘레드리스트’ 기업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공신부의 발표와 방향성이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펼치고 있음
 - 농업부 : <2017년 품질 안전에 대한 업무요점>을 발표하여 농산물의 품질 안전 감독업무를 추진함
 - 상해시(上海市) : 2017년 상무부의 육류 및 채소 유통의 추적 가능한 운행심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성도시(成都市) : 성도시 내 10,791개의 점포에서 육류 및 채소의 유통 추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영수증을 통해 판매시간, 지점, 가격, 운영자 정보, 도매시장의 정보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있는 일련번호를 통해 인터넷에서 구매제품의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하門市(厦门市) : 민생과 밀접한 식품은 매월 무작위로 추출 검사하여 식품의 추적 체계 구축을 가속할 예정임

2. 제2차 수입 식용 가능한 수생동물 지정 수입 관리소 명단 공고 발표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정보화부 / 발표일 : 2017.02.14.

- 수생동물이란 : '입경수생동물검사검역관리방법' 제3조에 의거하여 양식 활어류(이리, 어란 등 포함), 연체 수산물, 갑각류 등 포함

순번	성별 (시, 구)	입경 관리소 명칭	구안 검역장	유형	입국 가능한 수생동물 종류
1	흑룡강	쑤이펀공로 구안	쑤이펀공로 구안 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2	상하이	상하이항 구안	창싱다우작업구 형상어항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3	강소	강소창주뽀뉴공항 구안	강소창주뽀뉴공항구안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4		강소태창항 구안	강소소주태창항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5	산둥	산둥위해공항 구안	위해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6	후난	창사황화국제공항 구안	창사황화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7	주하이	주하이마카우과징공업구 전용 구안	주하이마카우과징공업구 전용 구안 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8	광시	난닝우쉬국제공항 구안	난닝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9	충칭	충칭장베이국제공항 구안	충칭장베이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10	윈난	쿤밍장수국제공항 구안	쿤밍장수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11		완딩구안	완딩구안 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12	산시	시안함양국제공항 구안	시안함양국제공항구안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주) A: 항공 운송, B: 수상 운송, C: 육로 운송

- 제1차 수입 식용 가능한 수생동물 지정 입국 관리소 명단

순번	성별 (시, 구)	입경 관리소 명칭	구안 검역장	유형	입국 가능한 수생동물 종류	
1	베이징	수도공항구안	수도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2	흑룡강	동닝구안	동닝 구안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3	랴우닝	선양타오센 국제공항구안	선양타오센 국제공항 구안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4		다롄국제공항구안	다롄국제공항구안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5		랴우닝 단동항 구안	랴우닝 단동항 구안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6		랴우닝 뤼순신강 구안	랴우닝 뤼순신강 구안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7		랴우닝 다롄강 구안		1.랴우닝다롄항잡화부두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8				2.다롄마신강검역장		
9	3.랴우닝다롄항리우강검역장					
10	길림	길림훈춘구안	길림훈춘구안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11		길림훈춘 권하구안	길림훈춘 권하 구안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12		길림장백구안	길림장백구안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13	상하이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구안	1.상하이푸둥국제공항검사검역장 2.상해 서포국제 농식품 교역센터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14	강소	수난소포 국제공항구안	수난소포 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15		난징 루커우 국제공항구안	난징 루커우 국제공항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16		쉬저우관인국제공항구안	쉬저우관인국제공항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17		렌윈강구안	렌윈강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18	절강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19		원저우 룽완 국제공항	원저우 룽완 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20	닝보	닝보항공구안	닝보 리셔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21		닝보항 구안 석포항구	신강 부두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22	푸젠	푸저우 첩글 국제공항 구안	푸저우 첩글 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23		핑탄구안 아우첸 항구	핑탄구안 아우첸 항구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24		푸젠장저우항구안 동산항구	푸젠 동산구안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25		푸젠 취안저우진장 공항 구안	진장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26	샤먼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구안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27		샤먼항구안 동두항구	1.현대 부두 검역장 2.통이 부두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28		샤먼항구안 하이창항구	통다 부두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29		칭다오 류팅 국제공항	중와운(칭다오)공항물류원구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30	산둥	칭다오항구안 황다오첸완항구	칭다오첸완시강연합부두유한책 임공사 85호 정박 위치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31		칭다오항구안 다강항구	1.홍다 컨테이너 야드(일본 로로서 한정)검역장 2.중와운 컨테이너 야드(한국 로로서 한정)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32		용안항 구안	영성시 용안항 항구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33		위해항 구안	위해항그류유한공사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34		스다오항 구안	스다오 신강 컨테이너 야드 검사검역 전용 구역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35	허남	정저우 신정 국제공항 구안	신정 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36	후베이	우한 텐허 국제공항 구안	텐허 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37	광둥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구안	1.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검사검역 집중 검역장 2.광저우 바이윈 국제물류 국제화물역 검역장 3.페덱스 아태 환적 센터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38		지에양차오산국제공항 구안	공항 화물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39	심천	심천만 구안	심천만 구안 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40		원진두 구안	원진두 구안 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41		황강 구안	황강 구안 검역장	C	어류, 갑각류, 연체류
42		엔텐항 구안 생선 작업 부두	엔텐 생선 작업 부두 감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43		심천 공항 구안	심천 공항 구안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44		서커우항 구안 천준식출 부두	서커우 식출 부두 검역장	B	어류, 갑각류, 연체류
45	해남	싼야 평항 국제공항 구안	싼야 평항 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46	사천	청두 샹류 국제공항 구안	샹류 국제공항 검역장	A	어류, 갑각류, 연체류

주) A: 항공 운송, B: 수상 운송, C: 육로 운송

3. 중국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에서 127개 국가식품 안전표준 갱신 통보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정보화부 / 발표일 : 2017.02.14.

구분	GB 번호	품목	비고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707-2016	신선(냉동)가축, 가금 제품	2017.6.23. 시행
	GB 2715-2016	식량	2017.6.23. 시행
	GB 2726-2016	익힌 육류제품	2017.6.23. 시행
	GB 14884-2016	당액이나 꿀에 절인 과일제품	2017.6.23. 시행
	GB 14932-2016	식품 가공용 찌꺼기	2017.6.23. 시행
	GB 19640-2016	물에 타는 곡물조제품	2017.6.23. 시행
	GB 17399-2016	캔디	2017.6.23. 시행
	GB 19643-2016	조류 및 그 조제품	2017.6.23.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준	GB20371-2016	식품 가공용 식물단백	2017.6.23. 시행
	GB 31636-2016	화분	2017.6.23. 시행
	GB 31637-2016	식용전분	2017.6.23. 시행
	GB 31638-2016	건락소	2017.6.23. 시행
	GB 31639-2016	식품 가공용 효모	2017.6.23. 시행
	GB 31640-2016	식용주정	2017.6.23.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GB 31641-2016	항공식품 위생규범	2017.12.23. 시행
	GB 1903.13-2016	L-카르니틴	2017.6.23. 시행
	GB 1903.14-2016	구연산칼슘	2017.6.23. 시행
	GB 1903.15-2016	초산 칼슘 (아세트산 칼슘)	2017.6.23. 시행
	GB 1903.16-2016	피로인산칼슘	2017.6.23. 시행
	GB 1903.17-2016	락토페린	2017.6.23. 시행
	GB 1903.18-2016	구연산 능금산칼슘	2017.6.23. 시행
	GB 1903.19-2016	골분	2017.6.23. 시행
	GB 1903.20-2016	티아민질산염	2017.6.23. 시행
	GB 1903.21-2016	셀레늄 풍부한 효모	2017.6.23. 시행
	GB 1903.22-2016	셀레늄 풍부한 식용균분	2017.6.23. 시행
	GB 1903.23-2016	셀레늄산 카라기난	2017.6.23. 시행
	GB 1903.24-2016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2017.6.23. 시행
	GB 1903.25-2016	D-비오틴	2017.6.23.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미생물학검사	GB 4789.1-2016	총칙	2017.6.23. 시행
	GB 4789.2-2016	균락총수 측정	2017.6.23. 시행
	GB 4789.3-2016	대장균군 계수	2017.6.23. 시행
	GB 4789.4-2016	살모넬라균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6-2016	설사발생 대장균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10-2016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12-2016	보툴리누스균 및 독소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16-2016	늘 보는 독소 발생하는 곰팡이에 대한 형태학 감정	2017.6.23. 시행
	GB 4789.30-2016	리스테리아균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34-2016	쌍기간균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35-2016	유산균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36-2016	대장균O157H7NM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40-2016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검사	2017.6.23. 시행	

구분	GB 번호	품목	비고
	GB 4789.42-2016	노로 바이러스 검사	2017.6.23. 시행
	GB 4789.43-2016	미생물원성 효소제의 항균력 검사	2017.6.23.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주 식품중의 성분측정	GB 5009.5-2016	단백질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6-2016	지방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8-2016	과당, 포도당, 자당, 맥아당, 유당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9-2016	전분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2-2016	아플라톡신B와 G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4-2016	아플라톡신M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5-2016	베르시콜로린 측정	
	GB 5009.26-2016	N-니트로소아민류 화합물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2016	벤조피렌(a)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8-2016	안식향산, 소르빈산, 사카린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32-2016	9종 향산화물질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33-2016	아질산염 및 질산염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36-2016	사이안화물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82-2016	비타민A, D, E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83-2016	카로틴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85-2016	비타민B2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87-2016	인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89-2016	니코틴산과 니코틴아미드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90-2016	철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92-2016	칼슘 측정	
	GB 5009.96-2016	오크라톡신A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11-2016	디옥시니발레놀 및 그 아세틸화 연생물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18-2016	T-2 독소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24-2016	아미노산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28-2016	콜레스테롤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37-2016	안티몬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49-2016	치자황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50-2016	홍국색소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54-2016	비타민B6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58-2016	비타민K1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68-2016	지방산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85-2016	파툴린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89-2016	붕고르산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91-2016	염소프로판올 및 그 지방족 에스테르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198-2016	패갑 중 실역성 독소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06-2016	수산물 중 테트로도톡신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08-2016	생체아민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09-2016	제아랄레논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12-2016	패갑 중 설사성 패갑독소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13-2016	패갑 중 마비성 패독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22-2016	시트리닌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61-2016	패갑 중 신경성 패독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62-2016	용제 잔류량 측정	2017.6.23. 시행	

구분	GB 번호	품목	비고
	GB 5009.263-2016	아스파탐과 알리탐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64-2016	초산 벤질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65-201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66-2016	메틸알코올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67-2016	요오드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68-2016	다원소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69-2016	활석분 측정	2017.6.23.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주 식품중의 성분측정	GB 5009.270-2016	이노시톨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1-2016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2-2016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에탄올 아민, 포스타티딜이노시톨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3-2016	수산물 중 미소시스틴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4-2016	수산물 중 시가톡신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5-2016	봉산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6-2016	포도당산-δ-락톤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7-2016	이초산나트륨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8-2016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측정	2017.6.23. 시행
	GB 5009.279-2016	자일리톨, 소르비톨, 말티톨, 에리스리톨 측정	2017.6.23. 시행
GB 5413.30-2016	유와 유제품 이물 정도 측정	2017.6.23.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준 음용천연광천수 검사방법	GB 8538-2016	음용천연광천수 검사방법	2017.6.23.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준 생산/가공 위생규범	GB 8950-2016	통조림식품 생산	2017.12.23. 시행
	GB 8951-2016	증류주 및 그 조제주 생산	2017.12.23. 시행
	GB 8952-2016	맥주 생산	2017.12.23. 시행
	GB 8954-2016	식초 생산	2017.12.23. 시행
	GB 8955-2016	식용식물유 및 그 조제품 생산	2017.12.23. 시행
	GB 8956-2016	당액이나 꿀에 절인 과일제품 생산	2017.12.23. 시행
	GB 8957-2016	떡, 과자, 빵 생산	2017.12.23. 시행
	GB 12694-2016	가축과 가금 도살 가공	2017.12.23. 시행
	GB 12695-2016	음료 생산	2017.12.23. 시행
	GB 12696-2016	발효주 및 그 조제주 생산	2017.12.23. 시행
	GB 13122-2016	곡물가공	2017.12.23. 시행
	GB 17403-2016	캔디 초콜릿 생산	2017.12.23. 시행
	GB 17404-2016	팽화식품 생산	2017.12.23. 시행
	GB 18524-2016	식품 조사(照射)가공	2017.12.23. 시행
	GB 20799-2016	육과 육제품 경영	2017.12.23. 시행
	GB 20941-2016	수산제품 생산	2017.12.23. 시행
GB 21710-2016	알 및 알 제품 생산	2017.12.23. 시행	
GB 22508-2016	원량 저장 운송	2017.12.23. 시행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1926-2016	함지 조사식품(輻照食品) 감정 2-DCB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 스펙트럼 분석방법	2017.6.23. 시행
	GB 23748-2016	조사식품 감정 선별 방법	2017.6.23. 시행
	GB 31642-2016	조사식품 감정 전자 스핀 공명 스펙트럼 방법	2017.6.23. 시행
	GB 31643-2016	규산염 함유 조사식품 감정 열루미네스스	2017.6.23. 시행

4. <아태무역협정>하의 중한원산지전자정보교환 시스템 개통 운영사항에 관한 공고

출처 : 해관총서공고 2017년 제10호 / 발표일 : 2017.02.04

<아태무역협정>하 편리한 수출입 화물통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8일부터 “아태무역협정 하의 중한원산지전자정보교환 시스템” 개통 및 운영이 시작되어, 실시간으로 해당협정 하의 중한양국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정보 형태로 전송한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화물수화인 및 그 대리인(이하 “수입자”라 한다)이 <아태무역협정>하의 한국에서 생산된 화물을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해관총서 2016년 51호 공고의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입화물세관신고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입경화물등록리스트>(이하 “수입세관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2. 2017년 2월 8일부터(당일 포함), 수입자가 <아태무역협정>하의 한국에서 생산된 화물을 수입신고할 때:
 - (1) 해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한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을 경우, 해관에서 수입자에게 다시 원산지증명서원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는다. 해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입자가 추가적으로 관련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2) 해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을 경우, 수입세관신고서를 취소처리한다.
 - (3) 2017년 5월 10일전에(당일 포함)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하여 적용된 협정세율로 신고할 수 있다.
 - (4) 2017년 5월 11일부터(당일 포함)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수입자가 해관총서령 제181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원산지보충 신고를 해야 한다. 적용된 협정세율을 설명하고 관련 화물의 담보통관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3. <아태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생산되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은 경우, 수입자가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물의 컨테이너번호 및 실번호가 변동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과과정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해관에서 직접운송규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5. 중국 식품첨가제 국제 표준에 따른 예정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정보화부 / 발표일 : 2017.02.14

-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십삼오(十三五) 국가식품안전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식품첨가제 표준을 국제표준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십이오(十二五)’ 계획 가운데 식품산업이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줌에 따라 정부의 관심도가 더욱 집중됨
- 십이오(十二五)란, ‘중국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을 뜻하는 의미로 2011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 추진 방향을 담고 있으며, 특히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그 중심에 있는 시진핑-리커창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음
- 중국의 식품첨가제 기준을 국제표준에 따르고자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불량 식품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중국 식품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중국 식품 품질 안전 수준의 기대치가 매우 낮음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기농 제품과 같은 고품질의 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식품 산업 장려 정책으로 식품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임
- ‘일대일로(一帶一路;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일로’를 뜻하는 말)’ 전략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 현지 식품원료기지 건립 또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장려하고 있음. 해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천연 식품첨가제의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함

6.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 발표

출처 : 상무부 해관총서 / 발표일 : 2017.3.9.

- o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무부, 해관총서에서 2015년 12월 10일에 발표한 <2016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은 동일자로부터 폐지됨

<자동수입 허가관리 제도란?>

“자동수입 허가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붙임의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 상의 품목은 통관을 보다 민감하게 요구하는 품목임. 목록 상의 수입제품들은 "자동수입허가증"이라는 증서를 통관 시 추가로 제출해야함.

다만, 해당 제도는 중국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중국 상무부에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내 발급하는 것이 원칙(서면 및 우편신청 모두 가능)

■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

품목	HS코드	비고
소고기	0201 2000 10	신선 혹은 냉장
	0201 2000 90	
	0201 3000 10	
	0201 3000 90	
	0202 2000 10	냉동
	0202 2000 90	
	0202 3000 10	
	0202 3000 90	
	0206 21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0206 2200 00	
	0206 2900 00	

품목	HS코드	비고	
돼지고기	0203 1200 10 0203 1200 90 0203 1900 10 0203 1900 90	신선 혹은 냉장	
	0203 2190 10 0203 2190 90 0203 2200 10 0203 2200 90 0203 2900 10 0203 2900 90	냉동	
	0206 4100 00 0206 49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양고기	0204 1000 00 0204 2100 00 0204 2200 00 0204 2300 00	신선 혹은 냉장 면양류
		0204 3000 00 0204 4100 00 0204 4200 00 0204 4300 00	냉동 면양류
		0204 5000 00	신선 냉장 냉동 산양
		0206 9000 10	내장 등 기타부위
		닭고기	0207 1200 00 0207 1411 00 0207 1419 00
	0207 1421 00 0207 1422 00 0207 1429 00 0504 0021 00		냉동 내장 등 기타부위
신선우유	0401 1000 00 0401 2000 00 0401 4000 00 0401 5000 00		설탕 단물질 미 첨가

품목	HS코드	비고
분유	0402 1000 00 0402 2100 00 0402 2900 00	
	1901 1010 00	영유아용 조제분유
대두	1201 1000 00 1201 9010 00 1201 9020 00 1201 9030 00 1201 9090 00	
유채씨	1205 1010 00 1205 1090 00 1205 9010 00 1205 9090 00	
식용유	1507 1000 00 1507 9000 00	대두유
	1509 1000 00 1509 9000 00 1510 0000 00	올리브유
	1511 1000 00 1511 9010 00 1511 9020 01 1511 9090 00	팜유
	1514 1100 00 1514 1900 00 1514 9110 00 1514 9190 00 1514 9900 00	겨자유
대두박	2304 0010 00 2304 0090 00	
카사바	0714 1010 00 0714 1020 00 0714 1030 00	
보리	1003 1000 00 1003 9000 00	
수수(고량)	1007 1000 00 1007 9000 00	
옥수수 주조	2303 3000 10	

품목	HS코드	비고
설탕	1701 1200 90	
	1701 1300 90	
	1701 1400 90	
	1701 9100 90	
	1701 9910 90	
	1701 9920 90	
	1701 9990 90	
담배	2401 1010 00	담배
	2401 1090 00	
	2401 2010 00	
	2401 2090 00	
	2401 3000 00	
	2402 1000 00	
	2402 2000 00	
	2402 9000 01	
	2402 9000 09	
	2403 1100 00	
	2403 1900 00	
	2403 9100 10	
	2403 9100 90	
	2403 9900 10	
	4813 1000 00	담배 종이 필터 등
4813 2000 00		
4813 9000 00		
5601 2210 00		

7. 농약 관리 개정안 발표

출처 : 중국 농업부 / 발표일 : 2017.3.30. / 발효일 : 2017.06.01

○ 농약 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 등록 부문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동 개정안은 임시 등록을 취소함.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약 및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약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중국 농업부가 발행하는 농약 등록 증명서가 필요함
- 동 개정안은 농업부의 농약등록평가위원회 설립을 규정함, 농약등록평가위원회는 농약 등록 평가를 책임지고 등록 평가 위원회의 구성원을 명확히 함
- 농약 등록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등록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신규 농약의 등록 시험의 경우, 농업부의 기준을 거쳐야 함
- 등록 시험은 농업부가 인정하는 등록시험기관이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규정 시험 기관은 등록 시험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등록 시험이 종료된 후, 신청자는 관련 문서 및 농약 등록기관의 승인 시한 등을 제출해야 함
- 농약 등록증은 유효기간과 연장 여부 및 변경 여부를 명시해야 함

○ 농약 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 관리 부문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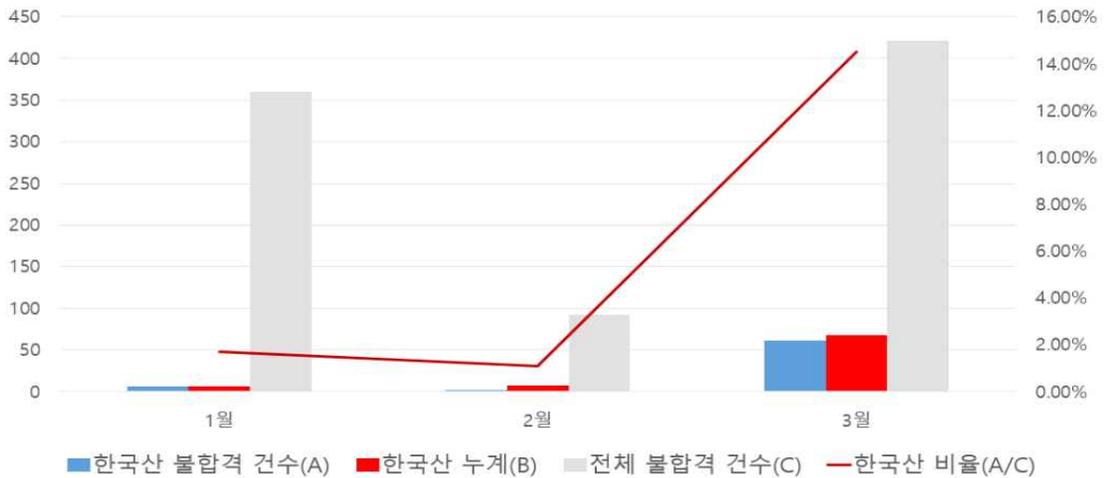
- 농약 생산 허가증 제도를 실행함. 농약 생산기업은 반드시 농약 생산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각 성급 농업부문이 심사하여 농업 생산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위탁 가공 및 포장의 경우, 위탁자는 상응하는 농약 등록증 및 농업 생산 허가증을 소지해야 함. 이를 통해 위탁자의 위탁 가공 및 포장에 대한 농약 품질을 책임을 명확히 함
- 생산기업이 원자재구입기록제도를 도입하여 원자재를 구매할 시 생산품의 품질 검사 합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허가 증명 문서 및 사실 기록을 확인해야 함
- 농약 생산기업은 엄격하게 생산품 품질 표준에 근거하여 생산하며, 농약 출하 판매상은 품질검사 합격을 거쳐 생산품의 품질 검사 합격증을 첨부하고 출하 판매 기록을 시행해야 함
- 농약 포장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라벨은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용농산품의 농약의 경우, 라벨에서 농약 안전기간(安全間隔期, safety interval)을 명시해야 함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 및 화장품들의 통관 거부 건수를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있음

- 2017년 1/4분기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 식품은 총 6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농산물 약 74%, 수산물이 약 26%를 차지함
- 2017년 1월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는 총 6건이며, 2월은 1건으로 가장 적은 통관 거부가 발생하였으나, 3월 통관거부 사례는 총 61건으로 크게 증가되었음

<2017년 1분기 중국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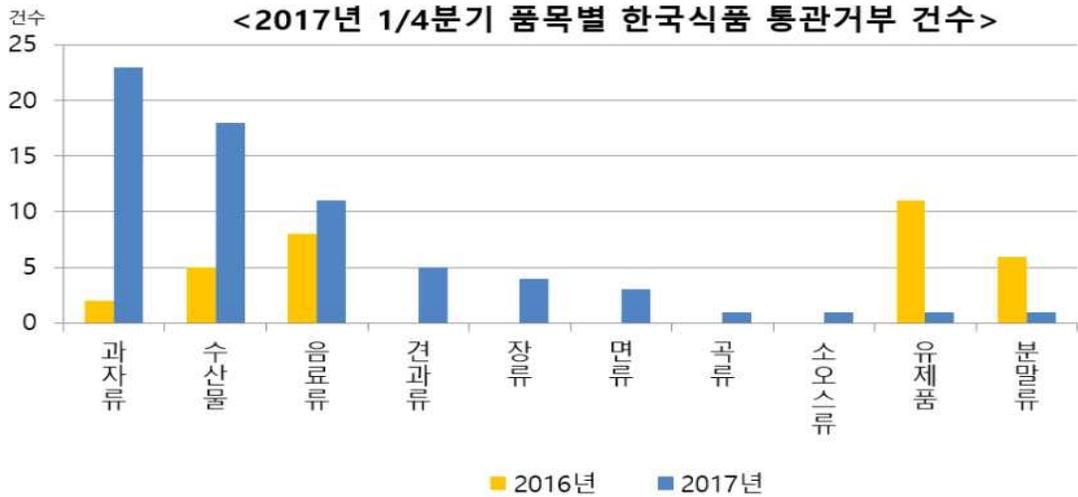
단위 : 건

	한국산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불합격 누계 건수(B)	전체 불합격 건수(C)	한국산 비율(A/C)
1월	6	6	360	1.7%
2월	1	7	92	1.1%
3월	61	68	422	14.5%
합계	68	68	874	7.8%

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2017년 1/4분기 통관 거부된 품목은 과자류, 수산물, 음료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17년 1/4분기 과자류가 23건으로 가장 많은 통관거부 사례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수산물(18건), 음료류(11건) 등임



단위 : 건

제품 종류	2016년 1/4분기	2017년 1/4분기
과자류	2	23
수산물	5	18
음료류	8	11
견과류	0	5
장류	0	4
면류	0	3
곡류	0	1
소오스류	0	1
유제품	11	1
분말류	6	1
합계	32	68

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2017년 1/4분기 한국산 식품의 가장 많은 통관 거부 사례는 라벨링 및 포장불합격이 차지

○ 2017년 1/4분기 통관 불합격 사유는 라벨링 및 포장 부문이 34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과 위생이 각각 14건, 서류미비는 6건임

○ 전년도 동기간에 발생한 통관거부 사례는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라벨링/포장은 전체에서 가장 낮은 5건으로 2017년 1/4분기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양상을 보임

< 사례별 분류 >

단위 : %



단위 : 건

거부 사유	2016년 1/4분기	2017년 1/4분기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19	14
위생	8	14
비위생적 제조	0	0
라벨링/포장	5	34
서류미비	0	6
기타	0	0
합계	32	68

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대응방안

- 최근 중국 사드배치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중 농식품 수출이 둔화되고 각 성별로 통관 검역 검사 수준이 강화되고 있음
 - 성주 부지에 사드 배치가 진행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대중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3월 대중 농식품 수출액(약 8,700만 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2017년 1~2월간 대중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지만, 3월 대중 농식품 수출액이 급감한 결과, 1/4분기 전체 대중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한편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지난 4월 24일에 발표한 2017년 3월 통관거부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건이 늘어난 68건을 기록, 큰 폭의 증가세 보인 것으로 집계됨
 - 지역별로 가장 높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성은 요녕성으로 전체 68건 중 약 25%인 1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성에서는 특히 제과류(초콜릿, 떡 등), 음료류의 적발이 두드러짐
 - 그 다음 거부 건수가 높았던 지역은 충칭시로 전체 68건의 약 22%인 1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성에서는 특히 팝콘, 견과류, 장류 등 농산물 가공품의 적발이 두드러짐

- 강소성 역시 총 13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자류, 면류 등의 적발 사례가 두드러짐
- 이와 관련해, 현지 수입업체들은 중국 검역당국이 유독 한국 제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지는 않다고 전함. 다만, 과거에 비해 검사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됨
 - 중국 현지의 한국식품 전문수입업체인 SINGSONG FOOD는 “ 당사는 주로 다롄항구를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검역 시, 예전에는 12가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2가지 품목만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통관을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검역 절차가 엄격해졌다. 즉, 12가지 품목을 모두 검사하고 있다. 통관 절차 및 소요시간도 예전에는 1주일이면 통관되었는데, 현재는 2주 혹은 한달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설명함
 - 중국 현지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무역컨설팅업체인 DAEHAN FOODTECH는 “과거에는 포장에 나와 있는 유통기한이 약간 틀려도 수정이 되면 통과가 되었다. 하지만 사드 영향으로 수정 허용이 되지 않고 모두 통관 거부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힘
- 상기 지역(강소성, 요녕성, 충칭시 등)들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의 통관검역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중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화된 검역 수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1/4분기 중국 전체 불합격 건수 (874건) 중 한국산 불합격 건수는 총 68건으로 7.8%를 차지

- 2017년 1/4분기 통관거부사례 분석 결과, 라벨링 미비 문제가 34건으로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였음
- 라벨링 미비로 적발된 경우는 음료류, 수산물류, 과자류, 초콜릿류, 견과류, 식물성 액즙, 소스류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농축액, 과즙음료 등이 포함되는 음료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11건)

- 대중 식품 수출 시 라벨 제작에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GB 7718-2011에 의거하여 식품 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 하며 식품 라벨은 최소 판매 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해야 함
 - 또한 식품 라벨은 규범화된 중문을 사용해야 하며, 중문과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음
 - 포장 최대 표면 면적이 20cm² 이상인 경우 식품 라벨에는 표기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커야하며 최대 표면 면적이 10cm² 이하인 경우 식품 라벨에 식품 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 상세한 중국 식품 표시 (라벨 제작) 기준 정보는 ‘aT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비관세장벽 이슈 게시판’ 내 ‘중국 성별 비관세장벽 심층리포트 (10월)’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kati.net/nonTariff/nonTariffNews.do?menuCode=1005&bbsid=1>

- 라벨링 미비 외에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원인이 14건으로 전체 약 20%, 위생 불량 원인이 14건으로 전체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14건)으로 적발된 사례 중 과자류가 총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쿠키류 한 건을 제외한 8건이 모두 사탕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원인은 비타민 E, 식품첨가물 디소듐타트레이트, 적양배추색소, 딱총나무 열매색소, 카르타민옐로우 등의 첨가물 기준치 초과였음

- 사탕류의 식품첨가물 기준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GB/T 23823-2009에 의거, 해당 규정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하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 <http://down.foodmate.net/> (사탕류 식품 표준 GB로 검색 필요)

- 위생 불량 (14건)으로 적발된 사례 중 해조류가 총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원인은 균락총수의 기준치 초과였음

- 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GB 19643-2005’에 의거, (김) 균락총수 최대 허용량인 30,000cfu/g를 준수해야 함

- 품목별 거부사례는 과자류가 23건으로 약 33%를 차지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 18건으로 약 26%를 차지함
- 거부 비중이 높았던 과자류는 특히 한 중소기업의 과일맛 사탕류 제품의 적발량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남. 세부 거부 사유는 성분 부적합, 서류미비, 라벨링 등이 있었음
- 과자 검역검증서 미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 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물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중국 식품첨가물 기준이 2020년부터 국제 표준으로 개정,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이하 공신부)가 2020년부터 현 중국의 식품첨가물 표준을 국제표준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중국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식품 표준(CODEX)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주요 규정 및 기준치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변경될 첨가물 규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standards/list-of-standards/en/>

□ 향후 구축될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내 블랙리스트 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현재 중국 주요 성들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내 "레드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제도(시범)에 따라, 농산물 품질 안전 레드리스트 발표와 블랙리스트 신고 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이는 농산물 품질 안전 이력 추적 체계 플랫폼에 가입된 생산경영주체와 농업 투입재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레드리스트의 포함 대상 기준은 성급(省) 이상 정부로부터 품질상을 수상하거나 유명제품, 유명상표(Famous Trade Mark) 등 영예를 새로 얻은 식용농산물 생산업체, 무공해농산물·녹색식품·유기식품 인증을 새로 받은 식용농산물 생산업체 등임
- 블랙리스트 포함 대상 기준은 주관당국의 정례 품질모니터링 또는 감독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한 식용농산물 생산업체, 조사에서 부적합 제품 또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 후 재조사에서 또다시 불합격한 식용농산물 생산업체 등임
- 레드리스트 유효기한은 1년, 유효기한 만료 후 자연히 삭제됨. 레드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중 유효기한 내에 심각한 부정행위로 레드리스트 자격이 취소될 경우, 2년간 레드리스트 기업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됨
- 블랙리스트 유효기한은 1년, 유효기한 만료 20일 전에 소재지 농업행정주관당국이 현장조사를 통해 규정위반행위가 시정되었는지 확인함
- 시정사실이 확인되면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더 블랙리스트에 머물게 됨
- 향후 대중 수출업체들은 통관거부 및 리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체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장기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1분기 통관거부사례

발생 일자	상품명	품목	검역 소	문제사유구 분	문제사유	조치 사항
1월	오징어채	수산물	산동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1월	**홍삼맛캔디	농산물	산동	서류미비	인증서류미비	소각
1월	**유기농 치즈 크래커	농산물	산동	서류미비	검역검증서 미비	소각
1월	**계란 모양 우유과자	농산물	상해	서류미비	인증서류미비	소각
1월	**포도씨유곽포장김	수산물	산동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1월	유가소스	농산물	산동	성분부적합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사용량 기준치 초과	소각
2월	**발효곡물분	농산물	강소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3월	**건조명대채	수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건조명태	수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타먹는귀리알갱이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전기로구운김맛 바삭바삭생선떡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전기로구운허니버터맛 바삭바삭생선떡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전기로구운오리지널맛 바삭바삭생선떡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요구르트맛 Q사탕	농산물	산동	성분부적합	비타민 E 기준치 초과	소각
3월	레몬박하사탕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식품첨가물 디소듐타트레이트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레몬사탕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식품첨가물 디소듐타트레이트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종합사탕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식품첨가물 적양배추색소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두종류사탕혼합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식품첨가물 적양배추색소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두가지사탕혼합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식품첨가물 적양배추색소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박하사탕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식품첨가물 적양배추색소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봉봉사탕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식품첨가물 적양배추색소 및 딱총나무 열매색소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포도초콜릿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키위초콜릿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키위초콜릿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포도초콜릿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스파게티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미검역 돼지고기 성분 검출	반송
3월	**볶음면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미검역 쇠고기 성분 검출	반송
3월	리얼생라면	농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미검역 쇠고기 성분 검출	반송
3월	최고의 선택 허니버터팝콘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카라멜팝콘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최고의 선택 카라멜팝콘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밀크초콜릿맛 팝콘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최고의 선택 버터팝콘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허니버터팝콘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딸기쿠키	농산물	산동	성분부적합	식품 첨가제 카르타민엘로우 및 적양배추색소 기준치 초과	소각
3월	**홍삼모나카	농산물	강소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반송
3월	**매일건과 (오리지널맛)	농산물	산동	위생	곰팡이균 기준치 초과	소각
3월	**매일건과 (블루베리맛)	농산물	산동	위생	곰팡이균 기준치 초과	소각
3월	**혼합건과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옥혼합건과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옥혼합건과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인동김	수산물	강소	성분부적합	영양 강화제 탄산칼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맛김(양념김)	수산물	산동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와사비맛김	수산물	심천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양념김	수산물	심천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소소야채맛김	수산물	산동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녹차올리브유김	수산물	산동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매운김치맛김	수산물	산동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양념김	수산물	심천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김(겨자맛)	수산물	광동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3월	아몬드맛 패스트푸드김	수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매운 패스트푸드김	수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양파즙 100	농산물	상해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반송
3월	고추장세트(4개포장)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고추장 멸치맛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고추장세트(2개포장)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고추장 건조 명태맛	농산물	충청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우유아이스크림	농산물	북경	위생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3월	** 복분자 농축음료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 유기농오렌지주스	농산물	산동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소각
3월	** 유기농포도주스	농산물	산동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소각
3월	**딸기과립음료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 석류 농축액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포도과립음료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 도라지 농축액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 배도라지 농축액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 도라지 농축액	농산물	요녕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소각
3월	**헛개나무열매음료100	농산물	상해	라벨링/포장	라벨링 불합격	반송

제 3 장 미 국

제 1 절

수입통관제도

1. 미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내 식품과 사료의 위생적 운송 규칙에 대한 3가지 면제 조항 발표

출처 : FDA / 발표일 : 2017.4.6

- 지난 2011년 1월 4일 법제화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패러다임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규제로 새롭게 제정됨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이란, 1938년 제정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을 개정한 것으로 70여 년 동안 유지해온 미국 식품 안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법률임
- 미국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을 통해 미국 내 식품제조회사 및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원재료 구매부터 공급망 등 포괄적인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 및 실행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방·관리하기 위함임
- 식품안전현대화법은 7가지 규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현대화법의 각 규정 발표 일자를 비롯한 요구 사항과 규정 준수 기한이 상이함
-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요 규정 시행일은 다음과 같음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	조건	시행일
식품 예방 관리	직원 500명 이하의 기업	2019.9.18
	3년간 매출 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의 기업	2018.9.19
사료 예방 관리	직원 500명 이하의 기업	2020.9.17
	3년간 매출 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의 기업	2019.9.18
해외 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FSVP)	최종규제 발표 후 18개월	2019.5.28
농산물 안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상이	2018.1.26.~ 2021.1.26

출처 : 미국 FDA

- 한편 2017년 4월 9일, FDA는 FSMA 하위 규정으로써 식품과 사료의 위생적 운송 규칙에 대한 3가지 면제 조항을 발표함
- 식품과 사료의 위생적 운송 규칙은 운송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에 최종 규칙이 발표됨.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1년 뒤 부터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현재 FDA는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상태로 운송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식품과 사료의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규칙’의 요건을 면제하고 있음
- 본 면제는 식품시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승인되어 운송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만 적용됨
- 여기서 식품시설은 FDA 규정 21 CFR 1.227에 정의된 식당과 슈퍼마켓, 식료품 가정 배달업체 등이 포함됨. 식품시설은 운송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에서 수령인과 송하인, 운송인으로 참여함

- 수령인(Receivers)은 식품을 식품시설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승인된 시설에서 물품을 받은 즉시 다른 식품시설로 배달해주는 경우임
- 송하인(Shippers)과 운송인(Carriers)은 소매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 시설로부터 식품이 배달되어 나가는 경우임. 예를 들면 하기의 경우가 해당됨
 - 승인된 식품시설 또는 외부 배달 서비스를 통해 식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
 - 승인된 식품시설 또는 연관 식품시설이 운영하는 또 다른 장소에서 식품이 배달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거나 요리되어 팔리는 경우
 - 전국 패류 위생 컨퍼런스(Interstate Shellfish Sanitation Conference, 이하 ISSC)의 국가 패류 위생 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이하 NSSP)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검사 받고 적절한 인증을 받은 운송 사업체가 굴과 조개, 홍합, 가리비와 같은 연체 조개류를 주(State) NSSP 인증기관이 허용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2. FDA, DUNS 번호를 해외 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FSVP)의 고유시설 식별번호로 인정

출처 : FDA / 발표일 : 2017.3.31

- 미국 FDA가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를 해외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FSVP)의 고유시설 식별번호(UFI)로 공식 인정함
- DUNS 번호는 미국 신용조사 전문 기업인 Dun & Bradstreet(D&B)가 개발한 9자리 수의 기업 고유번호임
-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통해 미국 식품 안전성 향상 및 현대적 식품 안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각 분야에서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FDA는 DUNS 번호 공식 인정을 통해 수입업체를 더욱 정확히 식별하고 FSVP가 요구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 및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3. 미국 돼지고기 샘플링 프로그램 개정

출처 : FSIS / 발표일 : 2017.3.31

-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안전 및 검사 서비스 부분에서 미국 돼지고기 샘플링 프로그램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식품안전검사국이 샘플링 프로그램을 개정을 통해 모든 돼지고기 샘플에서 살모넬라균과 STECs(shiga-toxin-producing E. coli: 시가 독신 생성 대장균), 지표세균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 기존 샘플링 검사는 첫 단계에서 돼지고기 제품 샘플에 대해 살모넬라균을 검사하고 샘플의 일부분에 한해서 STECs 검사를 진행함
- 개정 이후부터는 개별 샘플링 결과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한 달에 일정 일수를 고려하여 적법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샘플링 첫 단계 면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기존의 기준치에서 변경됨
- 기존에는 하루 평균 1~1,000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샘플링 첫 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함
- 개정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1~100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샘플링 면제 혜택을 받게 됨
- 101~1,000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 달 생산 일수가 21일 이상이면 샘플링을 받게 됨
- 돼지고기 샘플링 검사는 수집된 살모넬라, STECs, 대장균 O157:H7, 6개의 STEC 혈청군(O26, O45, O103, O111, O121, O145) 샘플들로 진행됨
- 또한 샘플은 두 가지 지표생물, 즉 일반 세균(AC)과 일반 대장균에 대해서도 검사함
- 이번 개정 발표는 돼지고기 제품 생산 업체에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4. 수입산 생육류 제품에 대해 향상된 재검사 수준인 MT51 대장균 샘플링 검사 실시 발표

출처 : FDA / 발표일 : 2017.3.13

-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수입된 육류 제품이 생고기라고 여겨질 경우, 일반 대장균 샘플링 수준이 아닌 보다 높은 수준의 MT51 유형의 대장균 샘플링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 내용은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도 적용됨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산 생육류 제품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병원균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식품안전검사국은 살모넬라와 STECs를 통해 샘플링 조사를 진행함
- 개정 내용에서 지칭하고 있는 ‘생고기(raw beef)’는 송아지 고기도 포함되며, ‘요소(components)’에는 머리 고기, 불살, 심장고기, 육회수공정 고기, 잘게 썬 쇠고기, 저온 숙성 고기, 부분 탈지한 쇠고기 지방 조직, 부분 탈지한 쇠고기가 포함됨

<수입 제품을 위한 식품안전검사국의 향상된 재검사 수준인 MT51 대장균 샘플링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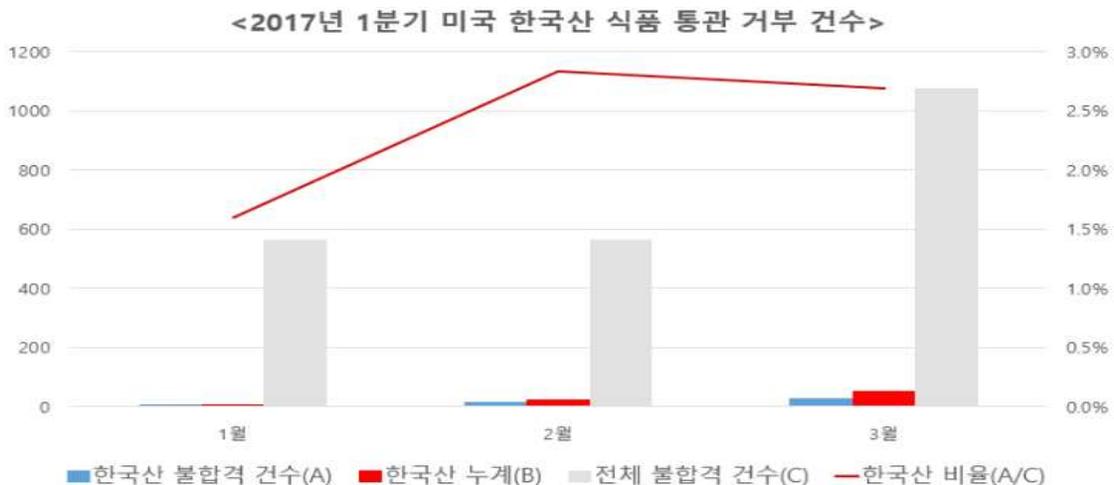
검사 유형	제품	분석 대상
향상된 재검사 수준인 MT51 대장균 샘플링 검사	뼈 없는 살밥 생고기 동물 사체(반쪽 또는 4등분)	대장균 O157:H7 비(非) 0157 STEC 살모넬라
향상된 재검사 수준인 MT51 대장균 샘플링 검사	머리 고기 불살 심장 고기 육회수공정 고기 잘게 썬 쇠고기 저온 숙성 고기 부분 탈지한 쇠고기 지방 조직 부분 탈지한 쇠고기	대장균 E. coli O157:H7 살모넬라

출처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 미국 식품의약품국은 식품을 비롯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통관거부 건수를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있음

- 2017년 1분기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 식품은 총 54건임
- 1월 미국 내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사례는 총 9건이었으며, 통관 거부된 한국산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류는 음료류로 음료, 차, 주스 등을 포함해 총 6개 제품이 적발됨
- 2월 미국 내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사례는 총 16건으로, 통관 거부된 제품 대부분 신선 농산물이며 대추, 호박, 양배추, 마늘, 버섯 등을 포함해 총 8개 제품이 적발됨
- 3월 미국 내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사례는 총 29건으로 적발된 한국산 통관 거부제품들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은 수산물, 소스, 과자, 채소, 인삼 등의 제품들이 확인됨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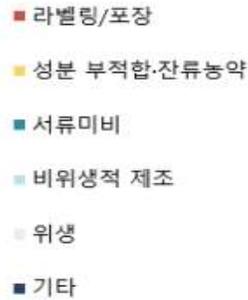
	한국산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불합격 누계 건수(B)	전체 불합격 건수(C)	한국산 비율(A/C)
1월	9	9	563	1.6%
2월	16	25	565	2.8%
3월	29	54	1,077	2.7%
합계	54	54	2,205	2.4%

출처 : 미국 FDA

□ 2017년 1분기 가장 많이 적발된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사례는 라벨 및 포장 불합격이 차지함

- 2017년 1분기 통관 불합격 사유는 라벨링/포장 부문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성분 부적합(17건), 서류미비(3건) 등임
 - 성분 부적합은 유해첨가물, 식품 내 함유 금지 성분 검출, 살모넬라 검출 등이 포함됨
- 1월 가장 많이 확인된 문제 사유는 성분 부적합으로 유해첨가물 함유가 세부 사유로 나타남. 성분 부적합에 이어 라벨링/포장 문제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됨
- 2월 가장 많이 확인된 문제 사유는 성분 부적합이 6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해첨가물 함유가 세부 사유로 나타남. 성분 부적합을 이어 라벨링/포장 문제는 4건으로 그 뒤를 이음
- 3월 가장 많이 확인된 문제 사유는 라벨링/포장 23건이며, 성분 부적합은 유해 첨가물 기준치 초과 등의 원인으로 6건을 기록함

< 사례별 분류 >



단위 : %

단위 : 건

거부 사유	2016년 1분기	2017년 1분기
라벨링/포장	14	30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17	17
서류미비	2	3
비위생적 제조	1	0
위생	0	0
기타	17	4
합계	51	54

출처 : 미국 FDA

□ 2017년 1분기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 중 가운데 수산물, 인삼류, 과자류, 음료, 채소류의 통관 거부 건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수산물이 9건으로 가장 많은 통관 거부 사례를 기록했고 그 다음은 인삼류 (7건), 과자류, 음료, 채소류가 각각 5건을 기록함

○ 특히 인삼류의 경우, 전체 통관거부 제품이 모두 인삼음료 제품이었음. 과자류의 경우 전체 통관거부 제품이 캔디류였음.

○ 채소류로는 잎 및 줄기 채소, 양파, 양배추, 마늘 등이 통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분기 제품별 한국식품 통관거부 건수 >



단위 : 건

제품종류	2017년 1분기
수산물	9
인삼류	7
과자류	5
음료	5
채소류	5
기타농산물	5
기타조제농산물	4
과실류	3
한약재	3
소스류	2
버섯류	2
곡물류	1
두류 (가공)	1
단백질류	1
면류	1
합계	54

출처 : 미국 FDA

대응방안

- 1/4분기 미국 전체 불합격 건수 (2,205건) 중 한국산 불합격 건수는 총 54건으로 전체 건수 중 2.4%를 차지함
 - 2017년 1분기 통관거부사례 분석 결과, 라벨링/포장 원인이 전체 약 56%를 차지함
 - 수출 기업들은 수출 제품에 해당하는 미국 식품 라벨링/포장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수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기본적으로 미국 식품 규제 당국은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라벨링 등에 대해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하여 통관을 거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성분 부적합 원인이 17건 적발되어, 전체의 약 31%를 차지함. 유해 성분 (농약 등) 및 금지성분 검출(기준치 초과)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 수출업체는 사전에 미국의 잔류 농약 및 식품첨가물 기준치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보 확인은 하기에서 검색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미국 식품첨가물 정보 제공
 - http://www.mfds.go.kr/fa/index.do?page_gubun=4&gongjeonca.=&nMenuCode=17
 - 미국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내 잔류 농약 검색 메뉴
 - <http://www.epa.gov/pesticides/food/viewtols.htm>
 - 품목별 거부사례는 수산물이 9건으로 54건 중 16%를 차지하였으며, 인삼류의 경우, 7건, 12%의 비중을 차지함

- 거부 비중이 높았던 인삼류는 거부된 제품이 모두 인삼음료였으며, 라벨링 정보 미비가 4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음. 또한 미등록 신약, 유해첨가물, 경구 문구가 없는 동물용 약품 포함 등의 사유로 거부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인삼 제품의 진입장벽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 확인은 하기에서 검색할 수 있음
 - goo.gl/Bc6zPW (사이트 주소 축약)
- 과일 및 채소류 (총 10건)의 경우, 유해첨가물(농약 추정) 거부 사례가 5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함

□ 사후관리 보다 사전 예방적 규제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예방·관리하고자 하는 미국 FDA

- 미국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보다 사전 예방을 통해 식품 내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려는 정책 변화를 보임
- 각 제도의 최종 지침 발표일 및 시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FSMA 정책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FSMA 관련 세부 내용의 변화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
- 정기적인 모니터링 정보는 미국 FSMA 코너를 참조
 - <https://www.kati.net/saf/safeLaw1.do?menuCode=974&bbsid=1/>
- 또한, 수출업체는 FDA가 요구하는 식품안전예방관리 기준에 맞게 사전 대응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입업체와 관련된 최종규제의 시행일이 연기된 만큼, 식품 안전성 보증을 위한 수출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함

□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최근 돼지고기의 검사 수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함

- FDA는 일반 대장균 샘플링 수준이 아닌 보다 높은 수준의 MT51 유형의 대장균 샘플링,

살모넬라균과 STECs(시가 독신 생성 대장균), 지표세균 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힘

- 최근 미국에서는 치즈, 아이스크림 등 각종 유제품, 축산물류에서 살모넬라 균 감염 사례가 발생, 피해자가 발생하고 감염 제품들이 리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음
- 이러한 사태를 반영하여 미국에서는 식품 전반에 있어 위생 검사 수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향후 대미 수출업체는 강화되는 규정에 맞추어 사전에 자가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수출 전에 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위탁·검사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하기에서 얻을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품질 검사기관 정보 확인
 - <http://www.mfds.go.kr/index.do?mid=1200>

□ FDA의 DUNS 번호 공식 인정으로 미국 수입업체의 DUNS 번호 취득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 FDA가 DUNS 번호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가 DUNS 번호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수입업체와 거래를 하는 업체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DUNS 번호 취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DUNS 번호는 D&B의 이메일, 전화,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취득할 수 있음
 - 이메일 : govt@dnb.com
 - 전화 : 1-86-6705-5711
 - 웹사이트 : <http://www.dnb.com/duns-number.html> or <https://fdadunslookup.com>
- 만일 DUNS번호를 받지 못해 FSVP 수입업자의 기재가 어려운 경우 하기로 연락하여야 함
 - 담당부서 : FDA 수입 담당부서
 - 이메일 : FDAImportsInquiry@fda.hhs
 - 전화 : 1-301-796-0356
- DUNS번호 취득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45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1분기 통관거부사례

발생 일자	상품명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구분	문제사유
1월	빨간 대추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1월	자두주스	농산물	시애틀	라벨링/포장	라벨링 관용명칭 표기 미비
1월	잎 및 줄기야채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1월	인삼 음료	농산물	시애틀	기타	신약 승인을 받지 못한 신약임
1월	차	농산물	뉴욕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1월	차	농산물	뉴욕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1월	젤리캐디	농산물	시애틀	라벨링/포장	라벨링 관용명칭 표기 미비
1월	초콜릿과 코코아 음료 베이스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1월	인삼 음료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영문라벨 없음
2월	오징어 및 기타 수산물	수산물	시애틀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2월	배, 과일 주스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기타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월	대추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기타	식품 특성 변질
2월	호박 주스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기타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월	양배추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서류 미비	위험미생물 불포함을 인증하는 서류 미비
2월	타로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2월	마늘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영문라벨 없음
2월	양파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서류 미비	위험미생물 불포함을 인증하는 서류 미비
2월	뿌리 줄기야채 주스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서류 미비	위험미생물 불포함을 인증하는 서류 미비
2월	타로 주스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2월	버섯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2월	버섯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2월	인삼 음료	농산물	노스캐롤	라벨링/포장	라벨링 제조자 정보 없음

			라이나		
2월	인삼 음료	농산물	위스콘신	라벨링/포장	라벨링 문구 미기입
2월	인삼 음료	농산물	위스콘시	성분 부적합	유해첨가물 함유
2월	비타민, 미네랄, 프로틴 및 다이어트 제품	농산물	신시내티	라벨링/포장	영문라벨 없음
3월	간장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간장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잘못됨
3월	곡류 오일시드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김치 (혼합채소)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대구류	수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말리거나 으갠 감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 부적합	금지성분 검출(기준치 초과)
3월	말린 / 페이스트형 대두 (두부제조용)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잘못됨.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및 영양소 정보 없음. 또한 위생상태 불량
3월	문어와 기타 해물류	수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복어	수산물	애틀랜타	성분 부적합	유해한 독성 물질 함유
3월	부드러운 과일 캔디 (초콜렛 제외)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성분 부적합	금지 성분 검출 (기준치초과)
3월	비탄산 인삼 음료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경고 문구가 없는 동물용 약품
3월	살구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잘못됨.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3월	소스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소스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잘못됨
3월	수산물, 생선알	농산물	로스앤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안젤리카 (차 형태는 아닌 허브&식물류)	농산물	신시내티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라벨 정보에 미승인 영양소 함량/건강 정보 포함.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잘못됨
3월	오리엔탈 누들 (새우, 치킨, 비프, 랍스터, 게, 플레인 맛 등)	농산물	로스앤 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오징어 및 기타 수산물	수산물	로스앤 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으깬 페이스트	농산물	로스앤 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인삼 음료	농산물	시애틀	라벨링/포장	라벨 정보에 미승인 정보 표기, 제조업체 등이 기재된 라벨 없음, 필수정보 영어로 적하지 않음
3월	잎 및 줄기 야채 음료	농산물	시애틀	라벨링/포장	라벨 정보에 미승인 정보 표기, 과일/채소 함유량 미비, 라벨에 영양소 정보 미포함
3월	조개	수산물	로스앤 젤레스	라벨링/포장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3월	쥐치	수산물	애틀랜타	성분 부적합	살모넬라 함유
3월	차	농산물	시애틀	라벨링/포장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미표기,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규정에 맞지 않음, 일반 소비자가 라벨링 이해 어려움
3월	차 아닌 허브 & 식물류	농산물	로스앤 젤레스	라벨링/포장	식품 무게, 단위나 수치 등에 기재된 라벨 없음, 필수 라벨정보 영어 미표기,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규정에 맞지 않음
3월	초콜렛, 견과류, 과일 함유되어 있지 않은 딱딱한 사탕	농산물	로스앤 젤레스	성분 부적합	금지 성분 검출 (기준치초과)
3월	카라멜 소프트 캔디 (너츠와 과일, 초콜렛 제외)	농산물	로스앤 젤레스	성분 부적합	금지 성분 검출 (기준치초과)
3월	해초 (잎&줄기 채소)	농산물	로스앤 젤레스	라벨링/포장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잘못됨.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3월	허브와 식물 (차 제외)	농산물	로스앤 젤레스	라벨링/포장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잘못됨. 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 4 장 일본

제 1 절

수입통관제도

1.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준 일부개정

출처 : 소비자청 / 발표일 : 2017.3.28

- 일본 식품 표시 기준(2015년 3월 30일 소식품 제 139 호 소비자청 차장 통보)에 별첨으로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검사 방법’ 및 ‘유전자 재조합 식품 검사 방법’은, ‘일본 식품 위생 검사 시설(식품위생법 제 29조에 규정된 검사 시설)의 업무 관리 통지’에 의거하여 식품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2017년 3월 28일 일본 소비자청은 ‘영양성분 분석방법’과 관련된 시험검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식품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 해당 개정에는 냉동 수산물 식품표시 및 영양강화 목적 사용 및 표시가 가능한 첨가물 (아셀렌산나트륨)도 추가되었음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준 신규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내용 붉은색 표시)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제 139 호) (총칙 관계) 1 적용 범위에 대해 (1) · (2) (생략) (신설)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제 139 호) (총칙 관계) 1 적용 범위에 대해 (1) · (2) (생략) (3) 시험 · 검사 업무 관리의 실시에 대해

<p>(3) 기타 특별용도 식품의 표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식품 표시 기준 외에도 건강증진법에 규정하는 특별용도 표시 허가 등에 관한 내각부령, 특별용도 식품 표시 허가 및 특정보건용 식품의 표시 허가를 등을 확인한다.</p>	<p>"영양 성분 분석 방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검사 방법" 및 "안전성 심사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검사 방법" 등 식품 표시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르는 시험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p> <p>'식품 위생 검사 업무'에 관한 고시인 "식품 위생 검사 시설 (식품 위생법 제 29조에 규정된 검사 시설을 말한다.)의 검사 업무 관리" 내 "식품 위생 검사 업무 관리 요령"을 준수하고 적절한 검사 업무를 실시한다.</p> <p>또한, 별도로 시험·검사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 통지하므로 적절하게 참조해야 한다.</p> <p>(4) 기타 특별용도 식품의 표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기준 외에도 건강증진법에 규정하는 특별용도 표시 허가 등에 관한 내각부령, 특별용도 식품표시 허가 및 특정보건용 식품의 표시 허가 등을 확인한다.</p>
<p>2 (생략) (가공 식품) 1 의무표시 사항 (1) (생략) (2) 저장방법 ① 식품위생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방법의 기준이 정해져있는 식품에 있어서는 저장기준 섭씨 10도 이하의 경우 "저장 온도 10 °C 이하", "4 °C 이하에서 저장" 등과 같이 그 기준에 맞는 저장방법을 표시한다. 또한 즉석면(즉석면 중 생 타입 즉석면 이외의 것을 말한다.)의 저장기준에 맞는 저장방법의 표시, 예를 들어,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기","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말 것"등 그 취지가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면 무방하다. 이 표시는 유통업체, 가정 등에서 가능한 보존 방법을 표시한다. ②·③ (생략) (3) ~ (12) (생략) 2-7 (생략) (신선 식품) 1 의무표시사항 (1) ~ (4) (생략) (5) 식품표시기준 별표 제 24에 정하는 것 ① ~ ③ (생략)</p>	<p>2 (생략) (가공 식품) 1 의무표시 사항 (1) (생략) (2) 저장방법 ① 식품위생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방법의 기준이 정해져있는 식품에 있어서는 저장기준 섭씨 10도 이하의 경우 "저장 온도 10 °C 이하", "4 °C 이하에서 저장" 등과 같이 그 기준에 맞는 저장방법을 표시한다. 또한 즉석면(즉석면 중 생 타입 즉석면 이외의 것을 말한다.)의 저장기준에 맞는 저장방법의 표시, 예를 들어,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기","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말 것"등 그 취지가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면 무방하다. 이 표시는 유통업체, 가정 등에서 가능한 보존 방법을 표시한다. ②·③ (생략) (3) ~ (12) (생략) 2-7 (생략) (신선 식품) 1 의무 표시 사항 (1) ~ (4) (생략) (5) 식품표시기준 별표 제 24에 정하는 것 ① ~ ③ (생략) ④ 냉동식품 중 생선포막, 어패류(생물을 제외한다)를 동결시킨 것-명칭 외에 냉동식품임을 표시함</p>
<p>⑤ 생 어패류에 관한 사항 가공식품에 관한 설명을 참조한다. 2 ~ 4 (생략) (첨가물) ~ (부칙) (생략) 별첨 첨가물 1-1 간략 명 또는 명칭 목록 - 별첨 첨가물 1-4 각 일괄 이름의 정의 및 그 첨가물의 범위 (생략) 별첨 첨가물 1-5</p> <p>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첨가제의 범위 (1) (생략) (2) 미네랄 (33 품목)</p> <p>아연염류 (글루콘산 아연 및 황산아연에 한한다.) L- 아스코르빈산 칼슘</p> <p>염화칼슘 염화 제이철 염화 마그네슘</p>	<p>⑤ 생 어패류에 관한 사항 가공식품에 관한 설명을 참조한다. 2 ~ 4 (생략) (첨가물) ~ (부칙) (생략) 별첨 첨가물 1-1 간략 명 또는 명칭 목록 - 별첨 첨가물 1-4 각 일괄 이름의 정의 및 그 첨가물의 범위 (생략) 별첨 첨가물 1-5</p> <p>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첨가제의 범위 (1) (생략) (2) 미네랄 (34 품목)</p> <p>아연염류 (글루콘산 아연 및 황산아연에 한한다.) L- 아스코르빈산 칼슘</p> <p>아셀렌산 나트륨 (추가) 염화칼슘 염화 제이철</p>

구연산칼슘 구연산제일철나트륨 구연산철 구연산철암모늄 그리셀로인산칼슘 글루콘산칼슘 글루콘산제일철 조산칼슘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스테아린산칼슘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구리염(글루콘 구리 및 구리 황산염에 한한다) 젓산칼슘 젓산철 피로인산이수소칼슘 피로인산제일철 황산칼슘 황산제일철 황산마그네슘 인산삼칼슘 인산삼마그네슘 인산일수소칼슘 인산일수소마그네슘 인산수소칼슘	염화 마그네슘 구연산칼슘 구연산제일철나트륨 구연산철 구연산철암모늄 그리셀로인산칼슘 글루콘산칼슘 글루콘산제일철 조산칼슘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스테아린산칼슘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구리염(글루콘 구리 및 구리 황산염에 한한다) 젓산칼슘 젓산철 피로인산이수소칼슘 피로인산제일철	황산칼슘 황산제일철 황산마그네슘 인산삼칼슘 인산삼마그네슘 인산일수소칼슘 인산일수소마그네슘 인산수소칼슘
---	--	---	---

2. 청량음료(미네랄워터류) 규격기준 개정

출처 : 소비자청 / 발표일 : 2017.3.28

o 일본 내 청량음료(미네랄워터류) 시험방법 및 규격기준 개정

- 통지에 규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시험법에 대해서도 기준치 준수 및 적합성 판단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됨
- 미네랄워터 원소시험법 <표5>에 ‘갈륨’이 추가(I 일제 시험법(I 一斉試験法) 참고)
- 미네랄워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법 <표2>에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희석배율 개정(I 일제 시험법(I 一斉試験法) 참고)

o 신규등재 및 개정된 법령

- 신규등재
 - 「청량음료 규격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시험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25일 생식발(生食発) 0125 제 6호)
- 개정법령
 - 「청량음료 규격기준의 일부개정에 따른 시험방법에 대해」 (2014년 12월 22일 식안발(食安発) 1222 제 4호)

3. 잔류농약 위반 한국산 깻잎 검사강화 해제 조치

출처 : 후생노동성 / 발표일 : 2017.3.14

- 한국산 깻잎은 잔류농약인 지니코나졸 농약성분이 위반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수입 건수의 30%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나, 과거 1년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2017년 3월 14일자로 모니터링 검사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완화됨
- 향후 검역소는 통상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수입자에게는 특별히 검사부과 등의 조치는 없음

4. 일본산 건조김 노로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주의 요망

출처 : 아사히신문 / 발표일 : 2017.3.28

- 2017년 3월 1일 조미김 가공업체 '토카이야'에서 제조된 건조김이 납품된 도쿄 다치카와시 학교급식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 건조김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일본에서도 최초로 발생
- 한국에서도 조미김이 원료로 다량 수출되고 있으므로 검사강화 등에 대비하여 수출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주의 필요

5. 농약, 동물성 의약품 규격 일부개정(2017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 49호)

출처 : 후생노동성 / 발표일 : 2017.2.23

- 식품위생법 (1947년 법률 제 233호. 이하 "법"이라한다)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농약 이소필라잠, 이미시아포스, 에토펜프록스, 에토프메세트, 키노메티오나트, 사

플루페나실, 1,3- 디클로로프로펜, 시플루메토펴, 비씨클로피론, 플루아지포프부틸, 메파니필림,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알레노게스트, 플루메토린, 베다프로펜, 메토클로프라미드, 로메플록사신에 대해 식품 중 잔류기준치 설정(별지 1 참조)

- 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기준이 설정되어있는 농약 티오메톤에 대해 식품 중 잔류기준치를 삭제
- 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이프로니다졸에 대해 식품에서 불검출 되어야 하는 성분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디메트리다졸, 메트로니다졸 및 로니다졸 시험법’을 삭제하고 새롭게 ‘이프로니다졸, 디메트다졸, 메트로니다졸 및 로니다졸 시험법’을 정함
 - 이프로니다졸은 이프로니다졸 및 그 대사물인 1- 메틸-2- (2'- 히드록시이소프로필) -5- 니트로 이미다졸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디메트다졸은 디메트다졸 및 그 대사산물인 2- 히드록시 메틸 -1- 메틸 -5- 니트로 이미다졸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메트로니다졸은 메트로니다졸 및 그 대사물인 1- (2- 히드록시 에틸) -2- 히드록시 메틸 -5- 니트로 이미다졸을 분석대상으로 함
 - 로니다졸은 로니다졸 및 그 대사산물인 2- 히드록시 메틸 -1- 메틸 -5- 니트로 이미다졸을 분석대상으로 함
- 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에서 불검출 되어야 하는 농약성분인 카프타홀에 대해 카프타홀 시험법을 정함
- 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에서 불검출 되어야 하는 농약 성분인 클로람페니콜의 시험법을 정함
-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2017년 2월 23일)로부터 적용되나, 이프로니다졸, 디메트리다졸, 메트로니다졸 및 로니다졸 시험법, 카프타홀 시험법 및 클로람페니콜 시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기존시험법의 사용을 허용

6. 월령이 48개월을 초과하는 (건강한) 소의 해면상뇌증 검사폐지

출처 : 푸드채널 / 발표일 : 2017.2.13

- 2017년 2월 13일 후생노동령 제 7호에 따라 ‘후생노동성 광우병 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월령이 48개월을 초과하는 (건강한) 소의 해면상뇌증(이하 BSE) 검사 폐지(본 개정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 일본에서는 국내 소 BSE 관련 규정을 적용한지 15년 이상이 경과, 국내외의 위험이 크게 감소했음을 내각부 식품 안전위원회의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에 건강한 소에 관한 BSE 검사를 폐지하는 개정을 올해 초 단행하였으며 전염성 해면상뇌증 검사 실시 요령도 함께 개정
- 신규 등재 및 개정된 법령

- 신규등재

- 후생노동성 광우병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에 대해 (2017년 2월 13일 생식발(生食発) 0213 제 1호)
- 특정 위험 물질의 관리 및 소 해면상뇌증 검사에 관한 관리 지침의 개정에 대해 (2017년 2월 13일 생식기발(生食基発) 0213 제 1호, 0213 제 2호)
- 전염성 해면상뇌증 검사 실시 요령의 개정에 대해 (2017년 2월 13 일 생식발(生食発) 0213 제 6 호)

- 개정법령

- 후생노동성 광우병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2002년 7월 1일 후생 노동성령 제 89호)
- 특정 위험물질의 관리 및 광우병 검사에 관한 관리지침 (2013년 2월 1일 식안기발(食安監発) 0201 제 3호, 0201 제 1호)
- 광우병에 관한 검사의 실시에 대해 (2001년 10월 16일 식안기발(食安監発) 제 307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70532.html>

7. 2017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 발표

출처 : 후생노동성 / 발표일 : 2017.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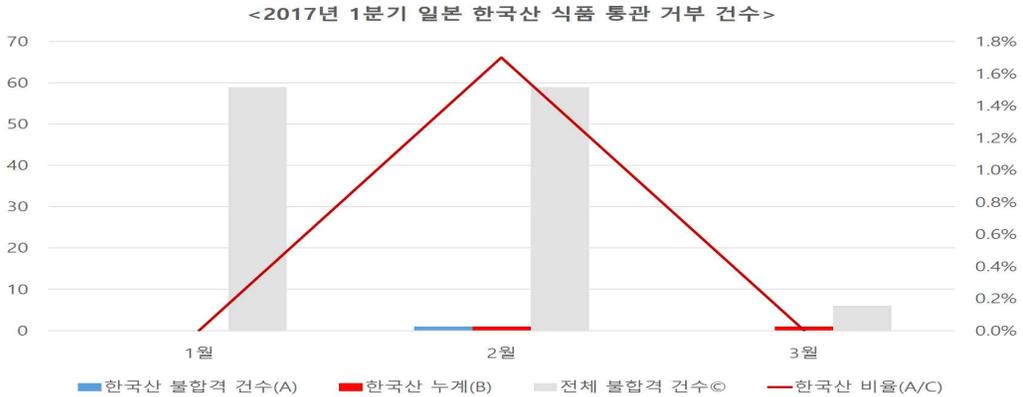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제 23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2017년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및 장난감 수입 감시지도 실시에 관한 계획 발표(금번 감시지도 계획은 일본 정부 회계연도 방침에 따라 매년 4월말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적용)
 - 소해면뇌상증 문제와 관련하여 현지조사 및 수입 시 검사를 통해 수출국 정부가 관리하는 수출품 검역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일본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할 예정
 - TPP를 포함한 경제연계협정 등을 고려하여 해외 여러 국가의 식품위생과 관련한 정보수집하고 수입동향에 맞는 감시체제를 정비 계획을 포함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도입상황 조사를 포함해 수출국가의 정부 및 생산자 등에 대한 HACCP 위생관리 보급 추진
- ※ 각 품목별 감시 모니터링 계획은 참고자료에서 확인

제2절

1분기 수입 통관거부사례 동향

□ 2017년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는 위생 원인으로 1건이 적발

- 2월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축산물 1건(압력가열 살균포장 갈비탕) 발생했으며, 1월과 3월은 통관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 건

	한국산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불합격 누계 건수(B)	전체 불합격 건수(C)	한국산 비율(A/C)
1월	0	0	59	0.0%
2월	1	1	59	1.7%
3월	0	1	6	0.0%
합계	1	1	124	0.8%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2016/2017년 1분기 통관거부 사유별 건수>

단위 : 건

거부사유	2016년 1분기	2017년 1분기
위생	2	1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2	0
라벨링/포장	0	0
서류미비	0	0
비위생적 제조	0	0
기타	0	0
합계	4	1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2017년 1분기 위생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는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위생관리 필요
 - 2017년 1분기 위생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건수는 1건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전체 통관거부 사례 중 위생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각각 64.7%, 72.7%를 차지한 만큼 식품위생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2017년 1분기 위생문제 요인인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검출률 비롯하여 대장균군 초과, 세균 초과, 곰팡이 초과, 비소 기준초과, 균락총수 등에 유의하며, 식품위생 교육 및 자체검사 실시 권장
-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른 시험검사 관리업무 실시 및 냉동 생선 및 냉동 어패류 표시 기준 주의요구
 - 일본의 시험검사 관리업무 실시는 영양성분 분석,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한 식품검사 및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
 - 식품위생 검사시설은 ‘식품위생 검사시설의 검사업무 관리요령’ 및 ‘식품위생 검사시설 검사업무 관리’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로 통지되는 시험검사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 기업은 일본의 식품위생 검사시설이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짐을 인지하고 제품의 식품위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따라 냉동 생선 및 냉동 어패류는 제품 명칭 외에도 ‘냉동식품’임을 명시해야 하므로 수출업체는 이를 반영하여 라벨 작성 및 포장 제작 시 유의하도록 함

제4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발생 일자	상품명	품목	검역소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 사항
2월	압력가열살균포장식품 갈비탕	축산물	시모노 세키	위생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양성 반응	폐기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3월 31일 조회기준

제5절

참고자료

□ 농약, 동물성 의약품 규격 개정

o 이소필라잠(살균제)

식품명	잔류기준치(ppm)	
	개정전	개정후ppm
밀	0.2	0.2
보리	0.6	0.6
기타 곡류	0.2	0.2
배추		5
양배추		3
상추 (샐러드 용 야채와 상추를 포함한다)		10
토마토		3
이루누		2
오이 (작은 오이를 포함한다)		1
호박		0.05
멜론 류 과일		0.05
사과		5
일본 배		3
서양 배		3
복숭아		0.2

살구		5
자두		2
매실		5
딸기		5
포도		10
바나나	0.06	0.06
소 근육	0.01	0.01
돼지의 근육	0.01	0.01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근육	0.01	0.01
가축의 지방	0.01	0.01
돼지의 지방	0.01	0.01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지방	0.01	0.01
소의 간	0.02	0.02
돼지 간	0.02	0.02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간	0.02	0.02
소의 신장	0.02	0.02
돼지의 신장	0.02	0.02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신장	0.02	0.02
가축의 식용 부분	0.02	0.02
돼지의 식용 부분	0.02	0.02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식용 부분	0.02	0.02
우유	0.01	0.01
닭의 근육	0.01	0.01
기타 가금류 근육	0.01	0.01
닭 지방	0.01	0.01
기타 가금류 지방	0.01	0.01
닭 간	0.01	0.01
기타 가금류 간	0.01	0.01
닭의 신장	0.01	0.01
기타 가금류 신장	0.01	0.01
닭의 식용 부위	0.01	0.01
기타 가금류 식용 부위	0.01	0.01
닭의 계란	0.01	0.01
기타 가금류 계란	0.01	0.01

o 이미시아포스(살충제)

식품명	잔류기준치(ppm)	
	개정전	개정후
콩		0.02
감자	0.1	0.1
토란 류	0.02	0.02
고구마	0.01	0.01
참마		0.05
무우 류 (무 포함)의 뿌리	0.03	0.03
무우 류 (무 포함)의 잎	1	1

배추		0.1
양배추		0.02
우엉	0.02	0.02
상추 (샐러드 용 야채와 상추를 포함한다)		2
부추		0.02
기타 백합과 야채		0.02
당근	0.03	0.03
토마토	0.3	0.3
피망		0.7
이루는	0.3	0.3
오이 (작은 오이를 포함한다)	0.1	0.5
수박	0.02	0.1
멜론 류 과일	0.05	0.05
시금치		0.5
오크라	0.03	0.03
완두콩		0.02
기타 야채		0.2
딸기	0.2	0.2

○ 에토펜프록스(살충제)

식품명	잔류기준치(ppm)	
	개정전	개정후
쌀 (현미를 말한다.)	0.5	0.5
밀	0.5	0.5
보리	0.5	0.5
호밀	0.5	0.5
옥수수	0.5	0.3
기타 곡류		3
콩	0.2	0.2
팥 류	0.2	0.2
누에콩	0.05	0.05
땅콩	0.05	0.05
기타 콩류	0.05	0.05
감자	0.1	0.05
토란 류	0.1	0.1
고구마	0.1	0.03
참마	0.1	0.1
사탕 수수	0.1	0.03
무우 류 (무 포함)의 뿌리	2	2
무우 류 (무 포함)의 잎	10	10

배추	5	5
양배추	2	2
콩나물	2	2
브로콜리		10
다른 십자화과 채소	1	1
상추 (샐러드 용 야채와 상추를 포함한다)	2	2
기타 국화과 채소	2	2
파 (부추를 포함한다)	2	2
쪽파	2	2
꿀벌	5	5
기타 미나리과 야채	2	2
토마토	2	2
피망	5	5
오이 (작은 오이를 포함한다)	2	1
호박	1	1
수박	2	2
멜론 류 과일	2	2
참외	2	2
오크라	3	3
생강	2	2
미성숙 강낭콩	2	2
완두콩	5	3
기타 야채	5	10
굴	2	2
여름 밀감의 과실 전체	3	3
레몬	5	5
오렌지 (네이블 오렌지를 포함한다)	5	5
자몽	5	5
라임	5	5
다른 감귤류 과일	5	5
사과	2	2
일본 배	2	2
서양 배	2	2
복숭아	2	2
천도 복숭아	0.6	0.6
포도	4	4
망고	5	5
유채	0.01	0.01

밤	2	2
차	10	10
기타 양념	20	20
기타 허브	0.7	0.7
소 근육	0.5	0.5
돼지의 근육	0.5	0.5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근육	0.5	0.5
가축의 지방	7	7
돼지의 지방	7	7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지방	7	7
소의 간	0.5	0.5
돼지 간	0.5	0.5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간	0.5	0.5
소의 신장	0.5	0.5
돼지의 신장	0.5	0.5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신장	0.5	0.5
가축의 식용 부분	0.5	0.5
돼지의 식용 부분	0.5	0.5
기타 육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식용 부분	0.5	0.5
우유	0.5	0.5
닭의 근육	0.01	0.01
기타 가금류 근육	0.01	0.01
닭 지방	0.5	1
기타 가금류 지방	0.5	1
닭 간	0.02	0.06
기타 가금류 간	0.02	0.06
닭의 신장	0.02	0.06
기타 가금류 신장	0.02	0.06
닭의 식용 부분	0.02	0.06
기타 가금류 식용 부분	0.02	0.06
닭의 계란	0.1	0.4
기타 가금류 계란	0.1	0.4
해산물	0.8	0.8
건포도	8	8

※ 이외 농약 및 동물성 의약품 기준치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tu/0000152665.pdf>

□ 농약, 동물성 의약품 시험법 개정

현행			개정 후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규정된 각 시험법의 검출 한계 등에 대해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규정된 각 시험법의 검출 한계 등에 대해		
농약, 의약품명	검출한계 (ppm)	비고	농약, 의약품명	검출한계 (ppm)	비고
2,4,5-T	0.05	생수에 있어서는 0.001ppm	2,4,5-T	0.05	생수에 있어서는 0.001ppm
알 드린	0.005	녹차의 경우에는 0.02ppm	알 드린	0.005	녹차의 경우에는 0.02ppm
엔도린	0.005	녹차의 경우에는 0.02ppm	엔도린	0.005	녹차의 경우에는 0.02ppm
딜도린	0.005	녹차의 경우에는 0.02ppm	딜도린	0.005	녹차의 경우에는 0.02ppm
오라킨독스 ※1	0.001		오라킨독스 ※1	0.001	
카바독스 ※2	0.001		카바독스 ※2	0.001	
카프타홀	0.01	생수에 있어서는 0.001ppm	카프타홀	0.01	생수에 있어서는 0.001ppm
쿠마포스	0.01	생수에 있어서는 0.001ppm	쿠마포스	0.01	생수에 있어서는 0.001ppm
클렌부테롤	0.00005		클렌부테롤	0.00005	
클로람페니콜	0.0005	로열 젤리에 있어서는 0.005ppm	클로람페니콜 ※3	0.0005	로열 젤리에 있어서는 0.005ppm
쿠로르스론	0.001		쿠로르스론	0.001	
클로르프로마진	0.0001		클로르프로마진	0.0001	
디에틸스틸베스트롤	0.0005		디에틸스틸베스트롤	0.0005	
디메트리다졸	0.0002		이프로니다졸 ※4	0.0001	
메트로니다졸	0.0001		디메트리다졸 ※5		
로니다졸	0.0002		메트로니다졸 ※6	0.0001	
다미노지드	0.1	생수에 있어서는 0.002ppm	로니다졸 ※7	0.0002	
텍사메타손	0.00005		다미노지드	0.1	생수에 있어서는 0.002ppm
파라티온	0.01		텍사메타손	0.00005	
α- 트레보론	0.002		파라티온	0.01	
β- 트레보론	0.002		α- 트레보론	0.002	
이 브롬화 에틸렌	0.001		β- 트레보론	0.002	
니트로 플라준	0.001		이 브롬화 에틸렌	0.001	
니트로플란토인 ※3	0.001		니트로 플라준	0.001	
플라졸리돈 ※4	0.001		니트로플란토인 ※8	0.001	
플라루타돈 ※5	0.001		플라졸리돈 ※9	0.001	
블로티졸람	0.0005	생수에 있어서는 0.001ppm	플라루타돈 ※10	0.001	
플로팜	0.01		블로티졸람	0.0005	생수에 있어서는 0.001ppm
말라카이트 그린 ※6	0.002		플로팜	0.01	
			말라카이트 그린 ※11	0.002	

- ※ 1 오라킨독스는 오라킨독스의 대사물인 3-메틸키노키사린 -2- 카복실산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2 카바독스는 카바독스의 대사물인 퀴녹 살린 -2- 카복실산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3 니트로플란토인은 니트로플란토인 및 니트로플란토인 대사물인 1- 아미노 히단토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4 플라졸리돈은 플라졸리돈 대사물인 3- 아미노 -2- 옥사졸리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5 플라루타돈은 플라루타돈 대사물 인 3- 아미노 -5- 모토 리노 메틸 -2- 옥사졸리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6 말라카이트 그린은 말라카이트 그린 및 그 대사물인 로이 프레임 라카이 그린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1 오라킨 독스는 오라킨독스의 대사물 인 3- 메틸키노키사린 -2- 카복실산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2 카바독스는 카바독스의 대사물인 퀴녹 살린 -2- 카복실산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3 클로람페니콜은 클로람페니콜 및 그 대사물인 글루크론산 포 합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 ※ 4 이프로니다졸은 이프로니다졸 및 그 대사물인 1- 메틸 -2- (2'- 히드록시이소프로필) -5- 니트로 이미다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검 출 한계는 각각 0.0001ppm이다.
- ※ 5 디메트리다졸은 디메트리다졸 및 그 대사산물인 2- 히드록시 메틸 -1- 메틸 -5- 니트로 이미 다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검출 한계는 각각 0.0002ppm이다.
- ※ 6 메트로니다졸은 메트로니다졸 및 그 대사물인 1- (2- 히드록시 에틸) -2- 히드록시 메틸 -5- 니트로 이미다졸을 분석 대상으로 한 다. 검출 한계는 각각 0.0001ppm이다.
- ※ 7 로니다졸은 로니다졸 및 그 대사산물 인 2- 히드 록시 메틸 -1- 메틸 -5- 니트로 이미 다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검출 한계는 각각 0.0002ppm이다.

※ 8 니트로프란토인은 니트로프란토인 및 니트로프란토인 대사물인 1- 아미노 히단토인을 분석 대상으로한다.
 ※ 9 플라졸리돈은 플라졸리돈 대사물인 3- 아미노 -2- 옥사졸리돈을 분석 대상으로한다.
 ※ 10 플라루타돈은 플라루타돈 대사물인 3- 아미노 -5- 모토리노메틸 -2- 옥사조리돈을 분석 대상으로한다.
 ※ 11 말라카이트 그린은 말라카이트 그린 및 그 대사물인 로이코 말라카이트 그린을 분석 대상으로한다. 검출 한계는 각각 0.002ppm이다.

□ 2017년도 수입감시지도 모니터링 계획

○ 품목별 감시 모니터링 계획

식품군	검사항목	항목별 건수	총 검사 건수
축산 식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기타 식용 새고기 등	항균성 물질 등	2,200	4,600
	잔류농약	1,200	
	첨가물	120	
	병원미생물	650	
	성분규격 등	400	
	방사선 조사	30	
축산 가공식품 천연치즈, 식육제품, 아이스크림, 냉동식품(육류) 등	항균성 물질 등	2,250	10,700
	잔류농약	1,750	
	첨가물	1,200	
	병원미생물	3,700	
	성분규격 등	1,800	
	방사선 조사	30	
수산 식품 조개, 어류, 갑각류(새우, 게) 등	항균성 물질 등	2,000	5,630
	잔류농약	1,400	
	첨가물	650	
	병원미생물	1,200	
	성분규격 등	320	
	방사선 조사	60	
수산 가공식품 어류 가공품(커팅한 생선, 건어물, 어묵 등), 냉동식품(수산동물류, 어류), 해산물 알 가공품 등	항균성 물질 등	3,550	18,650
	잔류농약	4,400	
	첨가물	1,950	
	병원미생물	3,800	
	성분규격 등	4,950	
	방사선 조사	60	
농산 식품 야채, 과일, 보리류, 옥수수, 콩류, 땅콩, 너트류, 씨앗류 등	항균성 물질 등	2,200	17,050
	잔류농약	9,750	
	첨가물	550	
	병원미생물	1,400	
	성분규격 등	350	
	곰팡이독	2,300	
	유전자 조작 식품	400	
	방사선 조사	100	
농산 가공식품	항균성 물질 등	600	20,900

냉동식품(야채 가공품), 야채 가공품, 과일 가공품, 향신료, 즉석 면류 등	잔류농약	6,800	
	첨가물	4,800	
	병원미생물	1,900	
	성분규격 등	3,500	
	곰팡이독	2,550	
	유전자 조작 식품	300	
	방사선 조사	450	
그 밖의 식료품 건강식품, 스프류, 조미료, 과자류, 식용 유지, 냉동식품 등	잔류농약	1,100	6,150
	첨가물	3,200	
	성분규격 등	900	
	곰팡이독	950	
음료 미네랄 워터류, 청량음료수, 알코올음료 등	잔류농약	100	2,020
	첨가물	1,100	
	성분규격 등	650	
	곰팡이독	170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장난감	성분규격 등	1,800	1,800
검사 강화 식품분	항균성 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 유전자 조작 식품, 방사선 조사, SRM 제거	10,000	10,000
	총계 (건수)		97,500

□ 일본 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치

○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 제조 및 가공식품을 동결시킨 냉동제품 중 섭취 시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케이크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제품

- 가열후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동결시킨 것 중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이외의 것을 말함) 동결시키기 직전 공정에서 가열처리된 것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햄버그, 면류, 소스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이외의 제품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상기 ②이외의 것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300,000/g 이하 음성	음성	새우튀김, 고로케등

※ 밀가루를 주원료로 섭취 전 가열공정이 필요한 냉동빵 생지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섭취 전에 충분한 가열, 소성할 경우에 한해 E,coli음성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o 생식용 냉동선어개류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장염비브리오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100이하/MPN

※ 냉동식품 중 생선피레,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

제 5 장 EU

제 1 절

수입통관제도

1. 이탈리아, 유제품 원료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발표

- 이탈리아 농림부는 4월 19일부터 유제품의 라벨에 유제품 원료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함
- 원료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해당하는 유제품은 젖소, 양, 염소 및 버펄로 등으로 만든 고온살균(UHT) 우유, 버터, 요구르트, 모차렐라, 치즈, 커드임
-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유제품 착유 국가와 가공국가를 표기해야 함
- 또한, 원료의 착유와 가공이 모두 이탈리아 내에서 이뤄진 우유 제품이면 원산지 표기를 'ORIGINE DEL LATTE: ITALIA (우유 원산지 : 이탈리아)'로 함
- 만약 착유가 이탈리아가 아닌 타 EU국에서 발생하면 'latte di Paesi U (EU국가 우유)'로 표시하며, 착유 및 가공이 타 EU국에서 발생하면 'latte condizionato o trasformato in Paesi UE(조건부 우유 또는 EU국에서 개조한 우유)'로 표기함
- 착유 및 가공이 이탈리아, EU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발생한 경우, 표기는 'Paesi non UE (비 EU 국가)'로 대체됨
- 또한, 농림부 장관은 이번 원료 원산지 표기 의무화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한 보호와 투명성 확보 과정이며, 이 규정이 유제품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고 모든 EU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2. 이탈리아, 식물 보호제(살충제) 성분 뷰프로페진 금지

- 이탈리아 보건부는 유럽 위원회가 채택한 (EU) No 360/2017에 의거, 식용작물 식물 보호제 허용 성분에서 뷰프로페진(buprofezin)을 제외하며, 이에 따라 사용범위는 비식용작물로 한정한다고 밝힘
- 식물 보호제는 살충제와 농약으로 나뉘며, 뷰프로페진은 살충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임
- 해당 성분의 라벨 적용 기한은 2017년 6월 21일이며, 그 전까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라벨을 만들어 보건부에 보고해야 함
-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라벨이 붙어진 제품의 광고는 2017년 12월 21일까지만 가능함
- 또한, 뷰프로페진 성분이 포함된 식물 보호제의 사용은 2018년 1월 21일까지만 가능함

3. EU, 알코올 라벨링 규정 개정

- 유럽연합 위원회는 (EU) No 1169/2011에 의거, 알코올성 음료의 영양 표시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사항으로 채택,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에 제출
-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알코올 음료에 건강 문구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승인된 영양 정보(알코올 도수 낮음, 에너지양)만 기재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임
- 알코올성 음료는 건강 강조 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허용되는 영양 강조 표시는 낮은 알코올 농도와 알코올 또는 에너지 함량 감소 정도임
- 성분 목록과 관련하여 알코올 음료에도 알레르기나 불내증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 또는 제품의 표시에 관한 규칙 1169/2011의 부속서 II가 동일하게 적용됨

- 따라서 알레르기 항원 규칙 1169/2011의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이나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과 같은 물질이 포함된 알코올 음료는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에 대해 알려야 함
-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중 규칙 1169/2011의 부속서 II에 없는 물질의 경우 알코올 음료 라벨에 표시되지 않음. 식품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EU에서 알레르기 표기가 필요한 성분은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및 그 제품, 난류 및 그 제품, 어류 및 그 제품, 땅콩 및 그 제품, 대두 및 그 제품, 우유 및 그 제품, 견과류, 셀러리, 겨자, 참깨 및 그 제품,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함유(10mg/kg 또는 10mg/l 이상) 가공식품 (SO₂로 표시), 루핀, 연체동물 등이 있음
- 이 규정은 알코올의 양이 1-2% 수준의 주류의 경우 면제됨

4. 터키산 패류 수입에 대한 감사 연장

- 2017년 1월 27일, 유럽 위원회는 터키산 패류 수입 허가를 위한 추가 감사 기간 만료일 2016년 12월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
 - 2015년 9월 실시된 유럽연합 위원회 감사단의 터키 현지 조사 결과 유럽연합 수출 조개류 일부가 유럽연합 수입식품 미생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 연구소의 실태도 유럽연합 요구 기준에 미달
- 2013년 유럽연합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743/2013에 따라 터키산 식용 패류는 유럽연합의 위생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 상태임

5. 식물성 식품 위해요소 세관 검사 업데이트

- 2016년 12월 1일 유럽연합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2107으로 결정된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의 위해요소 세관 검사 기준이 2017년 1월 1일 부로 적용
 - 세관 검사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품목으로는 볼리비아와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수단 산 땅콩 및 땅콩 함유 제품, 캄보디아 산 아스파라거스 콩, 중국 샬러리, 중국 산 꽃양배추, 가나 산 팜유, 인도 산 효소, 시에라리온 산 수박, 터키 산 포도 나뭇잎, 우간다 산 참깨 종실, 우즈베키스탄 산 말린 살구 및 살구, 베트남 산 고수잎과 오크라 등이 있음
 - 특히, 볼리비아 산 땅콩 및 땅콩 함유 제품, 우간다 산 참깨 종실과 가지, 베닌 산 파인애플, 이집트 산 생식용 포도, 터키산 석류는 새롭게 발견된 위해요소에 대한 강화된 검사 도입

품목	CN code	TARIC	원산지	위해요소	세관검사(%)
파인애플	0804 30 00		베닌	농약잔류	20
땅콩 및 땅콩 함유	1202 41 00		볼리비아	아플라톡신	50
	1202 42 00				
	2008 11 10				
	2008 11 91				
	2008 11 96				
	2008 11 98				
긴동부	ex 0708 20 00	10	캄보디아	농약잔류	50
	ex 0710 22 00				
가지	0709 30 00 ex 0710 80 95	72			
중국샬러리	ex 0709 40 00	20			50
꽃양배추	ex 0704 90 90	40	중국	농약잔류	50
차	902				10
긴동부	ex 0708 20 00 ex 0710 22 00	10	도미니카공화국	농약잔류	20
피망	0709 60 10 0710 80 51				
고추	ex 0709 60 99 ex 0710 80 59	20			

딸기	0810 10 00		이집트	농약잔류	10
피망	0709 60 10 0710 80 51				10
고추	ex 0709 60 99 ex 0710 80 59	20			
생식용포도	0806 10 10				20
땅콩 및 땅콩 함유	1202 41 00 1202 42 00 2008 11 10 2008 11 91 2008 11 96 2008 11 98		감비아	아플라톡신	50
헤이즐넛	0802 21 00 0802 22 00		조지아	아플라톡신	20
팜유	1511 10 90 1511 90 11	90	가나	수단 염료	50
	ex 1511 90 19 1511 90 99				
참깨종실	1207 40 90		인도	살모넬라균	20
효소	3507			클로람페니콜	50
완두콩	ex 0708 10 00	40	케냐	농약잔류	10
땅콩 및 땅콩 함유	1202 41 00 1202 42 00 2008 11 10 2008 11 91 2008 11 96 2008 11 98		마다가스카르	아플라톡신	50
산딸기	0811 20 31 ex 0811 20 11 ex 0811 20 19	10	세르비아	노로바이러스	10
수박	ex 1207 70 00 ex 1106 30 90 ex 2008 99 99	10	시에라리온	아플라톡신	50
		30			
		50			
땅콩 및 땅콩 함유	1202 41 00 1202 42 00 2008 11 10 2008 11 91 2008 11 96 2008 11 98		수단	아플라톡신	50
고추	ex 0709 60 99	20	태국	농약잔류	10
긴동부	ex 0708 20 00	10			20
	ex 0710 22 00	10			
가지	0709 30 00 ex 0710 80 95	72			
말린 살구 및 살구	0813 10 00 2008 50 61		터키	아황산염	10
레몬	0805 50 10				20
피망	0709 60 10 0710 80 51			농약 잔류	10
포도나뭇잎	ex 2008 99 99	11; 19			50
석류	ex 0810 90 75	30			20

가지	0709 30 00 ex 0710 80 95	72	우간다	농약 잔류	20
에티오피아가지	ex 0709 99 90	80			
	ex 0710 80 95	72			
참깨종실	1207 40 90			살모넬라균	50
피스타치오	0802 51 00 0802 52 00		미국	아플라톡신	10
말린 살구 및 살구	0813 10 00 2008 50 61		우즈베키스탄	아황산염	50
고수잎	ex 0709 99 90	72	베트남	농약잔류	50
바질	ex 1211 90 86	20			
민트	ex 1211 90 86	30			
파슬리	ex 0709 99 90	40			
오크라	ex 0709 99 90	20			
고추	ex 0709 60 99	20			
용과	ex 0810 90 20	10			

*출처: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6R2107>

6. EU - EFSA, 식품에 첨가된 설탕 섭취에 대한 기준치 발표 예정

- 2010년 EFSA는 설탕을 포함한 탄수화물과 식이 섬유에 대한 섭취 기준치 관련 과학적 의견을 발표함
- 그러나 해당 의견은 첨가 당의 일일 섭취량 상한을 정하는데 충분하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밝혀지고 있었음
- 또한 설탕을 함유한 식품과 음료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EFSA는 2020년까지 식품에 첨가된 설탕의 하루 섭취량에 대한 적절한 기준치를 발표할 예정임
- EFSA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판정 기준치 (cut-off value) 설정을 목표로 함
- 이번 조치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됨
- 기준치 발표를 통해 EU 회원국에 식품 내 첨가된 설탕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임

- 기준치를 발표하는 설탕류는 포도당 시럽, 과당 시럽과 같은 수크로오스, 과당, 포도당, 전분 가수 분해물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모든 설탕 제제, 당류가 포함됨
- 이번 기준치 설정을 위해 EFSA는 설탕을 섭취하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유럽 내 일반 인구의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할 것임
- 설탕 부작용으로는 체중 증가, 포도당 불내성 및 인슐린 감수성, 2 형 당뇨병, 심혈 관계 위험, 치아 건강 문제 등이 포함됨
- 스웨덴 국립 식품 청장인 Annica Sohlström은 "유럽 수준에서 설탕과 건강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EFSA는 식이 노출, 역학 조사, 인체 영양, 식이 관련 만성 질환 및 치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 실무 그룹을 이번 평가에 배치할 예정임. 이 임무를 시작한 북유럽 5 개국 전문가들은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됨
-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약속에 따라 EFSA는 평가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임. 2018년 상반기에 초안 발표, 피드백을 받고 2019년 말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두 차례 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포함될 예정임

7. 특정 과일 및 채소 진입 가격 결정을 위한 표준 수입 값 설정

- 2017년 3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특정 과일 및 채소 진입 가격에 대해 제3국 수입품에 대한 표준 수입 값을 고정함
- 표준 수입 값은 일일 변동 데이터를 고려하여 작업일마다 계산되며, 해당 규정은 EU 회원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적용됨
-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기 주소와 참고 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90248034155&uri=CELEX:32017R0495>

8. 식품 안전을 위한 새로운 유럽연합 식품 유통 검사 규정 도입

- 2017년 3월 15일 유럽연합의회는 기존에 시행하던 식품 유통 검사 규정 EU Official Control rules, Regulation (EC) No 882/2004을 더욱 강화하여 Regulation (EU) 2017/625 규정 도입.
- 2013년 유럽 말고기 스캔들 이후 유럽연합은 기존에 존재하던 식품 단속 규정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2016년 6월 15일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관련 규정과 합의를 도출
- 해당 규정은 2017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6년 이내에 모든 세부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
- 신규 도입된 규정은 기존의 식품 안전 관련 단속 규정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식품 및 사료, 동물 및 식물의 위생에도 적용되며 유럽연합 내부 시장 식품 뿐 아니라 수입되어 들어오는 품목에도 적용
- 기존의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적용하여 과거 위반 기록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될 예정
- 단속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전 유통 단계를 포괄하여 이루어짐
-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 단속 당국은 년 1회 수행보고서를 공개해야함
- * 출처 : https://ec.europa.eu/food/safety/official_controls/legislation_en

9. 가금류 관세 할당량에 따라 분배 계수 설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33/2007에는 유럽의 가금류 제품 수입에 대한 연간 관세 쿼터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유럽 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수입 기간에 대해 제출된 가금류 수입 허가 신청서의 수량이 허용 가능한 수량을 초과함
- 이에 따라 Regulation (EC) No 533/2007에 의해, 수입 신청된 가금류 수량에 분배 계수를 설정하기로 결정함

o Regulation (EC) No 533/2007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된 수량은 이 규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할당 계수와 곱해져야 함

< 가금류 관세 할당량에 따른 분배 계수 설정 >

주문 번호 (Order No)	분배 계수 - 4 월 1 일부터 2017 년 6 월 30 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출 된 신청서(%)
09.4067	-
09.4068	0,365823
09.4069	0,137403
09.4070	-

출처 : 유럽위원회

10. 일부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MRL) 조정 발표

o 2017년 1월 30일부터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0을 비롯한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1 규정의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MRL)을 조정함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 조정 사항>

품목	농약	기존 최대 허용 잔류량	개정 후 최대 허용 잔류량	기준
배추	비펜트린	0.05mg/kg	0.01mg/kg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0
딸기, 블랙베리, 대파	펜프로피모르프	1mg/kg	0.01mg/kg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0
호박씨	플루아지포프-피	10mg/kg	5mg/kg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1

o 바나나 재배에 사용되는 디엔토펜카브와 대두 재배에 사용되는 할록시포프의 경우 최대 농약 잔류량 완화를 요청함

11. 미국산 가금류 수입 및 통관 금지 조치

- 2017년 3월 20일 결정된 시행세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481에 따라 미국산 가금류 일부는 유럽연합국가 내로 수입 또는 통관이 금지됨
 - 지난 3월 4일 미국의 조류독감(HPAI) 발발로 미국-유럽공동체의 1998년 육류 위생과 관련한 조약 Council Decision 1998/258/EC에 따라 미국은 유럽연합위원회에 질병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 미국 위생 당국은 발병 농가가 위치한 테네시의 링컨 카운티와 그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프랭클린, 무어 카운티, 알라바마 주의 메디슨, 잭슨 카운티에서 생산되는 가금류에 대한 수출용 위생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상태임
- 유럽연합은 발병 농가와 반경 10km 내에서 생산된 가금류뿐만 아니라 테네시 주와 알라바마 주 전체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수입 혹은 통관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출처:<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89417664701&uri=CELEX:32017R0419>

12. 브라질산 육류 부분적 수입 금지

- 2017년 3월 18일 브라질의 일부 육류 업체의 비위생적인 육류 가공공정이 드러남에 따라 EU는 3월 20일 해당사건에 연류된 업체의 수입허가를 취소, 이미 수송되고 있는 해당업체 육류는 폐기 처분 될 예정
 - 적발된 업체 중에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업체인 JBS와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업체인 BRF도 포함됨
- 유럽연합 위원회는 5월 중순에 브라질 식품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힘.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39334648>

<http://www.reuters.com/article/us-brazil-corruption-food-eu-idUSKBN16V23Z>

13. 일부 수입 가공육류 품목에 관한 수의증명서 강화

- 2017년 3월 31일 유럽연합 위원회 시행세칙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622에 따라 광우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공육류 품목의 수의 증명서 모델 중 원산지 증명 부분 강화
 - 해당품목은 소, 양, 염소 가공육, 내장 등 육류 부속물임
 - 기존의 수의증명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국가의 육류가 다른 저위험 국가에서 가공되어 유럽연합국에 유입될 수 있어 지적되어왔음
 - 이번 결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로 지정, 2017년 11월 30일 이전에 작성된 개정 전 수의증명서를 동반한 가공육류 품목의 수입이 허가됨

*출처:<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91826525560&uri=CELEX:32017D0622>

14. 동물성 가공식품 통관 기준 강화

- 2016년 7월 20일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196을 통해 동물성 가공식품에 대한 수의학 검사가 의무화로 결정되면서, 2017년 1월 1일 도착 상품부터 수의학 검사를 함
- 이에 따라 초콜릿, 과자류(사탕 포함),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올리브, 젤라틴, 식품보충제, 육류제품이 혼합되지 않은 면류 등의 제품이 검역 강화됨
- 여기에는 50% 미만의 가공육 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과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 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히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가 포함됨

15. 과자류에 감미료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hcosides, E960) 첨가 허용

- o 2017년 2월 27일 발표된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335 기준에 따르면, 저칼로리 과자류에 대해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hcosides) 첨가를 허용함
- o 기존 규정에 따르면 스테비올 배당체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과자류에만 허용됨
- o 스테비올 배당체는 설탕 맛을 보존하면서 칼로리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o Regulation (EC) No 1331/2008에 따라 스테비올 배당체의 식품 첨가물 안정성을 입증, 기존 무칼로리와 더불어 저칼로리 식품에 대해 첨가를 허용함

<품목별 스테비올 배당체 최대 허용량>

품목	최대 허용량(mg/kg)
구강청량용 사탕	2,000
딱딱한 사탕	350
부드러운 사탕	
리퀴리스	
누가 및 마지팬 목캔디	670

16. 슈도모나스 시린가에 균 확산 방지 위한 정책 제안 발의

* 출처: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198 of 2 February 2017

- o 2017년 2월 2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198)는 슈도모나스 시린가(*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에 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의
- 슈도모나스 시린가에는 키위 열매 궤양병을 유발하는 식물병원균으로 감염될 경우 식물의 줄기와 가지에서 붉거나 흰 세균 점액질이 분출, 심할 경우 식물전체가 사망함

- 2020년 3월 3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이 제안이 채택 될 경우 슈도모나스 시린가에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식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
- 해당 식물 재배지에서 균의 존재 여부, 두 번에 걸친 검사, 및 감염 여부와 관련된 식물 위생 증명서가 요구
- 제 3국에서 수입된 해당 식물일 경우, 수입/통관 시, 식물 위생증명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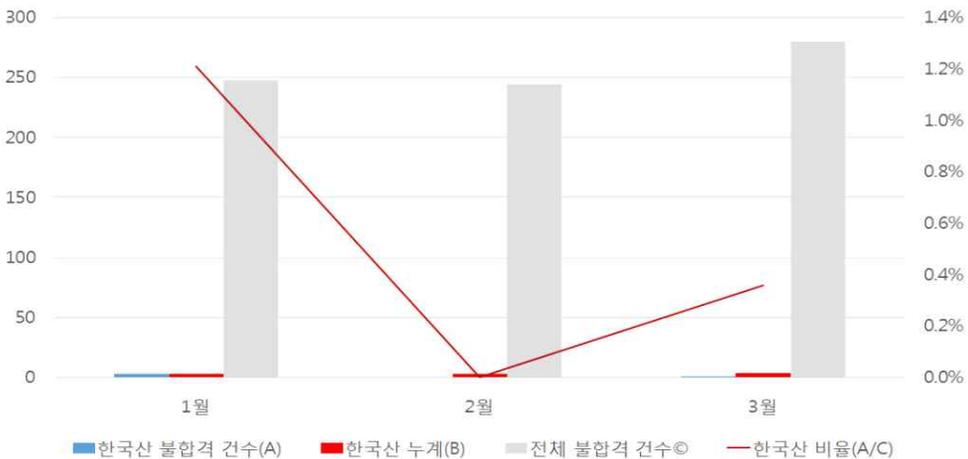
17. 인도산 참깨 및 구장나무 잎에 대한 검역 강화

- 2017년 2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86)에서 인도산 참깨 및 구장나무 잎의 미생물 오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위생증명을 요구
- 인도산 참깨와 구장나무 잎은 이미 살모넬라균 검출로 2014년부터 통관 검사 비율이 한층 강화되었음 (각각 20%, 10%).
- 이 결정에 따라 인도산 참깨와 구장나무 잎은 통관 시 추가적인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함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RASFF)은 유럽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통관 거부 건수를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있음
- 2017년 1분기 유럽에 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은 총 4건으로 1월 통관 거부 사례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월은 통관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3월에는 1건의 통관 거부 사례가 발생함
- 1~3월까지 유럽 내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 제품은 버섯, 말린 가금류, 소프트드링크, 냉동 황새치로 총 4건이었음

<2017년 1분기 한국산 EU 식품 통관 거부 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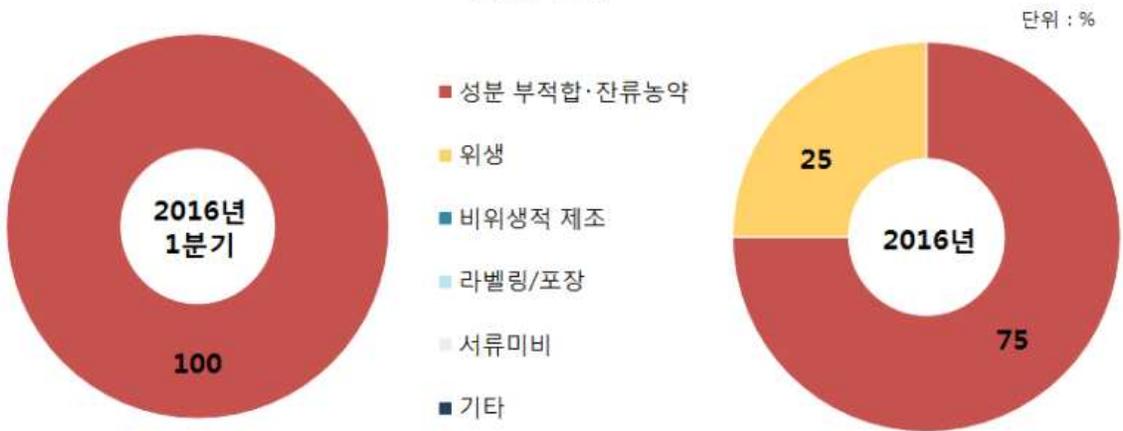
	한국산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불합격 누계 건수(B)	전체 불합격 건수(C)	한국산 비율(A/C)
1월	3	3	248	1.2%
2월	0	3	244	0%
3월	1	4	280	0.4%
합계	4	4	772	0.5%

출처 : RASFF

□ 2017년 1분기 한국산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통관 거부 사례는 성분부적합, 잔류농약이 차지함

- 해당 기간 통관 불합격 사유는 성분 부적합·잔류농약이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전년도 동기기간에 발생한 불합격 사유도 이와 같으며, 성분 부적합으로 검출된 해당 성분은 알루미늄, 카드뮴 등으로 중금속 함량 규정을 위반함

< 사례별 분류 >



단위 : 건

거부 사유	2016년 1분기	2017년 1분기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4	3
위생	0	1
비위생적 제조	0	0
라벨링/포장	0	0
서류미비	0	0
기타	0	0
합계	4	4

출처 : RASFF

대응방안

- 2017년 1분기 적발된 통관거부사례 가운데 적발된 원인 가운데 성분 부적합 사유로 적발된 사례가 75%를 차지함. 적발된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음의 기준치를 준수하여 이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버섯 리스테리아 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Regulation (EC) No 2073/2005에 의거, 식품의 경우 시판되기 전 표본 검사에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면 안 됨
 - 말린 해초류 요오드 검출 사례와 관련해서는 Regulation (EC) No 396/2005에 의거, 해조물의 요오드 최대허용량은 0.01 mg/kg임
 - 소프트드링크 내 젓당 성분 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성분은 라벨링 및 포장 표기 없이 첨가되면 안 됨
 - 냉동 황새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Regulation (EC) No 1881/2006에 의거, 수산물의 수은 최대 허용량은 1.0 mg/kg임
- 유럽국들의 잇단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책으로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 필요
 - 2017년부터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함
 - 유럽 시장은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의 4번째로 큰 수출국임. 2016년 11월까지 신선 식품 수출은 약 2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9.4%의 성장을 기록함
 - 특히 라면 등이 포함된 면류(3.7% 증가)와 소스류(8.6%), 유제품(2.3%) 등이 수출 확대에 기여한 만큼 EU 국가들의 육류, 우유 및 낙농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o EU국들의 이번 원산지 표기 의무화 결정은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육류에서 시작되었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낙농 제품에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 범위가 보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o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높음
- o EU 국가 수출 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제4절

1분기 통관거부사례

거부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문제 사유 구분	문제 사유	조치 사항
네덜란드	1월	버섯	농산물	위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1100 CFU/g) 검출	리콜
독일	1월	말린 해초류	수산물	성분부적합	요오드 검출 (분석결과 : 206, 193mg/kg - ppm)	리콜
독일	1월	소프트드링크	농산물	성분부적합	미승인 젓당 (4.5 g/kg) 검출	리콜
이탈리아	3월	냉동 황새치 슬라이스	수산물	성분부적합	수은합량초과	리콜

출처 : 유럽위원회

※ 3월 31일 조회기준

제 6 장 기 타 국

제 1 절

수입제도현안

1) 대만

□ 대만, 식품 표기 및 광고에 대한 과대광고 기준 개정

출처 : 대만 식품약품관리국(FDA) / 발표일 : 2017.3.16

- 대만 위생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8조를 실행하여 식품표시, 홍보 상의 과대광고, 의학적 효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
- 본 기준과 건강식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자는 건강식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함
- 과장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의료 효능은 다음과 같음
 - 예방, 개선, 경감(감소), 진단, 질병 치료 또는 특정 생리 상황에 대한 광고
 - 질병을 유발하는 체내의 성분을 감소 또는 저하시키는 것에 대한 광고
 - 제품이 질병 및 질병 증후군 또는 증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한 광고
 - 한방약재의 효능 언급
 - 서적, 고서 또는 타인의 것을 인용, 발췌하여 의약적 효능 언급
- 의료 효능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과장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
 - 생리 기능을 언급
 - 신체의 외관적 부분의 개선을 언급
 - 위생 복지부의 식품 허용 번호 또는 뜻이 비슷한 문구 인용

- 과장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의료효능과 무관한 문구
 -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 (ex, 소화를 도와줌, 건강 유지, 체질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
 - 생리기능을 언급한 일반 영양소에 대한 예문 (ex, 음식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운동을 촉진함 등)
- 보다 자세한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77>
- 본 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발효됨

□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에 대한 표준 개정

출처 : 대만 식품약품관리국(FDA) / 발표일 : 2017.3.15

- 대만 위생 복지부는 <농약잔류 허용량에 대한 표준>의 제3조 부록 표 1 <생략된 MRL 살충제 목록>, 제6조의 부록 표 5 <작물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수정안 초고를 발표함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41가지 농약이 각 채소, 과일, 식물 등 351가지 농산물에 잔류 가능한 허용량을 개정함
 - 좁쌀, 명아주 등 잡곡류와 락규, 황마잎 등 잎이 있는 제품의 농약 잔류 허용량이 추가 개정되었으며, 128가지 채소와 22가지 과일 잔류 농약 허용량이 완화됨
-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금껏 다른 국가에서는 차 종류에 허용하지 않았던 ‘플루오 피람(Fluopyram)’ 농약 성분에 대해 최대 잔류 허용량을 6ppm으로 허용함
- 이외에도 상추류에 자주 사용하는 ‘디메토모르프 수화제(Dimethomorph)’ 농약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량을 기존 6ppm에서 10ppm으로 상향 조정함
- 보다 자세한 농약 기준치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함
<http://www.fda.gov.tw/EN/lawContent.aspx?id=304&chk=31fb845f-f591-46b5-8666-8f4909e0f3e5¶m=pn=1&cid=16&cchk=d49032f6-b48e-4ab3-8fb9-223dad1b0407&subClassifyID=&Class1=>
- 본 개정안은 2017년 3월 15일부터 발효됨

□ 대만, 츠요우(豉油)류 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위생 기준 개정

출처 : 대만 식품약품관리국(FDA) / 발표일 : 2017.1.6

- 대만 위생복지부서가 츠요우류 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위생 기준을 개정함. 본 개정에는 츠요우 제품의 식품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및 판매에 있어서 위생 기준이 개정됨
 - ※ 츠요우란 간장과 설탕 대신 쓰이는 양념간장을 뜻함
- 츠요우 제품이 사용되는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등은 이번에 개정된 식품 위생 표준과 <식품 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의 규격 표준> 규정에 부합해야 해야 하고 제조과정에 사용한 용기, 기구, 포장용품 등 또한 <식품의 기구 및 용기의 포장 위생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츠요우 제조업자는 사용되는 식품첨가제의 명칭, 허가증 번호, 입하량, 사용량 및 재고량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검수 및 사용기록은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본 개정안은 2017년 1월 19일부터 발효됨

2) 홍콩

□ 홍콩, '목재 포장재' 열처리 인증 기업 수수료 개정

출처 : 홍콩 농림부(AFCD) / 발표일 : 2017.3.21

- 홍콩 농림부가 '목재 포장재 열처리' 기업 인증에 대해 수수료를 개정함
- 열처리 회사를 위한 승인 인정 신청에 해당하는 새로운 요금은 다음과 같음
 - 1건을 기준으로, 승인 인정을 위한 신청 270달러, 열처리 회사 책임자 인터뷰 775달러, 열처리 회사 운영자를 위한 서면 검사 385달러, 열처리 운영에 대한 실제 시험 검사 1,010달러임

- 열처리 승인 갱신 신청에 해당하는 새로운 요금은 다음과 같음
 - 1건을 기준으로, 관련 검사 및 승인 갱신을 위한 검사 1,250달러, 승인 통지 및 승인 마크 사용 허가 발급 165달러임
- 본 개정안은 2017년 3월 27일부터 발효됨

□ 홍콩, 한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출처 : 홍콩식품안전센터(CFS) / 발표일 : 2017.3.21

- 홍콩 식물환경위생서 식물안전센터(CF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에서 고위험군 H5N6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발표
- 이에 따라,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한국의 강원도, 경상남도, 인천시, 세종시, 부산시와 베트남 팡찌 성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계란 포함)의 수입을 금지
 - 홍콩 CFS 관계자 말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한국, 베트남 정부와 연락을 취했으며,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함
- 홍콩은 작년에도 한국의 AI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견으로 약 2,500톤의 냉장 가금류와 398만여 개의 가금류 제품(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
- 이로 인해 한국 농업계는 최근 중화권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삼계탕 수출 역시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지금껏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H5N1형과 H5N8형, H5N6형을 포함해 모두 3가지임
- 홍콩의 대한민국 가금류 수입은 2014년 5월부터 전면 금지돼 2015년 수입은 없었음. 홍콩은 연중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고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 수입금지 등 강경 조치를 취함

- 2016년 3월 초에 홍콩 정부는 수입을 재개함. 그러나 AI가 재발하자 경기도,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류에 대해 단계적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림

<최근 홍콩의 한국산 가금류 조치 현황>

날짜	수입 재개/중단 현황
2014.1.17(금)	전라북도 가금류 수입 중단
2014.1.30(목)	충청남도/전라남도산 가금류 수입 중단
2014.2.7(금)	충청북도/경기도/경상남도산 가금류 수입 중단
2014.5.2(금)	세종시 가금류 수입 중단
2014.5.7(수)	한국산 가금류 수입 중단
2016.3.7(월)	한국산 가금류 수입 재개
2016.3.29(화)	경기도산 가금류 수입 중단
2016.9.6(화)	경기도산 가금류 수입 재개
2016.11.21(월)	전라남도산 & 충청북도산 가금류 수입 중단
2016.11.25(금)	경기도산 가금류 수입 중단
2016.11.28(월)	충청남도산 가금류 수입 중단
2016.12.5(월)	전라북도산 가금류 수입 중단

출처 : 홍콩 식품안전청(CFS)

3) 캐나다

□ 캐나다, 과일 및 견과류 생산자를 위한 생물안보 가이드 발표

출처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 발표일 : 2017.3.31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과일 및 견과류 생산자에 대한 생물안보 가이드를 발표함
 - 생물안보 가이드는 생물학적 안전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해충의 발생 및 확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함. 또한, 과일 및 견과류 부문의 안보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제공함
 - 동 가이드는 2016년 3월 발간된 과일 및 견과류 산업을 위한 농장 자발적 수준의 국가 생물안보 표준의 내용을 뒷받침함. 개별 생산자는 생물안보 표준 및 생물안보 가이드를 자발적으로 전체를 채택하거나 기존 농장 방역 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개별 생산자는 생물안보 표준을 이해하고, 자체 검사를 시행한 뒤, 생물안보 가이드를 활용하여 개별 농장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 및 모니터링 것을 권장함
- 동 가이드는 평가, 해충 식별, 해충의 확산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 가이드가 제시하는 방안을 모두 실행하는 것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해충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 및 생산지에 대한 확산 경로 분석을 권함. 전파 경로로 살아있는 생물, 퇴비 및 비료 등의 투입물, 사람, 차량, 도구 및 장비, 완제품, 쓰레기 등이 있음
- 동 가이드는 생산자가 개발한 생물안보 계획을 직원, 방문객 및 이웃에게 전달하고 교육할 것을 제시하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세부 항목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 직원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생물 안보 조치 및 정보 훈련 여부, 의견 제공 요청 여부, 직원의 언어로 교육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음. 방문객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생물 안보 조치를 알리기 위한 표지 사용 여부, 통보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웃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생물안보 프로토콜이 의사소통되었는지를 포함함

□ 캐나다, 제초제 설펜트라존(Sulfentrazone) 기준치 개정

출처 : 캐나다 보건부 / 발표일 : 2017.3.3

- 캐나다 보건부(Canadian Ministry of Health)가 제초제 기준치를 개정함
 - 최근 설펜트라존 제초제 함유량이 초과한 농산물이 캐나다 보건 당국에 적발되면서 이슈화됨
- 식품의 제초제 잔류량 확인은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으로 적용됨(품목별 기준치 p12 참조)
- MRL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가공식품에도 적용됨. 단, 별도의 MRL이 농산물 및 가공 농산물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임
- 본 개정안은 2017년 3월 3일부터 발효됨

4) 호주

□ 호주, 수입 식품 검사 시스템 개정 예정안 발표

출처 : 호주 농림수산부 / 발표일 : 2017.3.21

- 호주 농업수자원부가 수입 식품으로 인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해충 및 질병을 막기 위해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정되는 식품 표준 규정은 호주에서 제조되는 식품을 포함해 모든 판매용 식품에 적용될 예정임
 - 해당 규정은 <수입 식품 관리법 1992>에 따라 적용되며, 수입업체는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식품 표준 규정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호주 수입 식품 검사 시스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입 식품 검역에 대해 식품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해당국 정부의 인증서 제출 시, 호주 식품검역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식품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다양한 검사 및 분석 프로그램으로 위험을 모니터링 하는 행정명령을 제정함
 - 호주 식품 안전 시스템과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입 식품의 국경 허가를 용이하게 함
 - 모든 수입업자에 대해 식품 수입과정의 전·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해당 개정안은 2017년 중반 호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8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함

1분기 통관거부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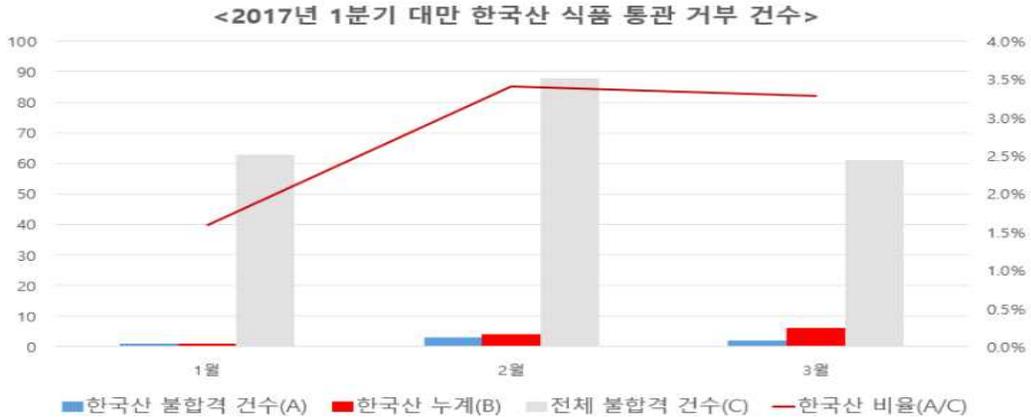
※ 대만을 제외한 기타국(홍콩, 호주, 캐나다)은 한국산 통관거부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을 비롯한 대만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통관거부 건수를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있음

○ 2017년 1/4분기 대만에서 통관 거부된 한국 식품은 총 6건임

○ 1월 전체 불합격 건수는 63건이며, 한국산 제품이 1건을 차지함. 2월은 전체 불합격 88건, 한국산 제품이 3건이며, 3월은 전체 불합격 61건에서 한국산 제품이 2건 확인됨

○ 대만 내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 제품 중 신선 딸기가 5건, 깻잎이 1건임



단위 : 건

	한국산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불합격 누계 건수(B)	전체 불합격 건수(C)	한국산 비율(A/C)
1월	1	1	63	1.6%
2월	3	4	88	3.4%
3월	2	6	61	3.3%
합계	6	6	212	2.8%

출처 : 대만 위생복지부

□ 2017년 1/4분기 한국산 식품 모두 성분 부적합·잔류농약으로 인해 통관이 거부됨

○ 2017년 1/4분기 주요 거부 사유는 성분 부적합·잔류농약으로, 인독사카브, 디플루벤주론, 파라벤 등과 같은 농약 성분의 기준치 초과로 인해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2016년 통관거부사례와 동일한 사유로 주의가 필요함

○ 해당 제품들의 불합격 사유는 깻잎의 경우 방부제 파라벤 검출, 딸기의 경우 인독사카브, 플루페녹수론, 타아클로프리드, 펜헥사마이드, 디플루벤주론, 스피로테트라맷 등 농약의 기준치 초과였음

< 사례별 분류 >



단위 : 건

거부 사유	2016년 1/4분기	2017년 1/4분기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4	6
위생	0	0
비위생적 제조	0	0
라벨링/포장	0	0
서류미비	0	0
기타	0	0
합계	4	6

출처 : 대만 위생복지부

대응방안

□ 대만 2017년 1/4분기 적발된 6건의 통관거부사례 모두 성분 부적합이 원인으로 확인됨. 기업들은 다음의 기준치를 준수하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적발된 6건의 통관거부사례 가운데 83%가 식품 내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인해 성분 부적합으로 분류됨
- 對대만 농산물 수출기업은 수출 전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에 대한 표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거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신선 딸기 품목 내 잔류 농약 성분 허용 기준치>

성분	영문명	최대 허용량
인독사카브	Indoxacarb	0.01ppm
디플루벤주론	Diflubenzuron	
플루페녹수론	Flufenoxuron	
티아클로프리드	Thiacloprid	0.05ppm
펜헥사미드	Fenhexamid	검출되어서는 안 됨
스피로테트라맷	Spirotetramat	

출처 : 대만 식품약품관리국

□ 대만 농약 잔류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명확한 기준을 파악해야 함

- 대만 식품약품관리국(FDA)이 야채, 과일, 식물 등 351가지 농산물에 잔류 가능한 41가지 농약 잔류 허용량을 개정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지속해서 대만 정부의 식품 정책 변화를 파악하여 변화된 기준에 대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함
- 특히 개별 농약별 잔류 허용치 기준 및 농약 잔류 허용 여부가 달라, 업체별 해당하 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자세한 농약 기준치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fda.gov.tw/EN/lawContent.aspx?id=304&chk=31fb845f-f591-46b5-8666-8f4909e0f3e5¶m=pn=1&cid=16&cchk=d49032f6-b48e-4ab3-8fb9-223dad1b0407&subClassifyID=&pClass1=>.

□ 단기간으로 해결이 어려운 홍콩의 가금류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 홍콩 당국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업 자체적인 위생 점검이 필요

- 홍콩은 2015년 12월에 ‘가금류 및 계란 수입 개정안’을 발효해 홍콩으로 가금류와 계란 수입 시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명시함.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 필요
- 홍콩 정부의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수출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사태 종식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관련 수출업체는 홍콩 당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한국산 가금류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금류 산업의 기업들은 위생 수준을 높이고 초기 검출 방역 시스템을 완비해야 함
- 한국에서 매년 AI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이로 인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출 난항이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적임

□ 캐나다 제초제 설펜트라존(Sulfentrazone) 기준치 개정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의 필요

- 캐나다 보건부가 제초제 설펜트라존의 최대허용량을 개정함에 따라 캐나다에 채소류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각 품종의 설펜트라존 최대 허용량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품종별 설펜트라존 최대 허용량>

품종	최대허용량
녹색 잎의 채소류	0.4ppm
줄기가 있는 채소류	0.2ppm
과일 및 기타 채소, 견과류	0.15ppm

출처 : 캐나다 보건부(Canadian Ministry of Health)

참고자료

<대만 1-3월 통관 거부 발생 사례>

국가	발생 일자	상품명	품목	중량(kg)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대만	1월	신선 딸기	농산물	624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 인독사카브 0.38ppm, 디플루벤주론 0.06ppm, 스피로테트라맷 0.02ppm 검출
대만	2월	매콤한 깻잎	농산물	10.5	성분 부적합	방부제 파라벤 0.02g/kg 검출
대만	2월	신선 딸기	농산물	1,248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 플루페녹수론 0.04ppm, 티아클로프리드 0.02ppm 검출
대만	2월	신선 딸기	농산물	936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 인독사카브 0.07ppm, 디플루벤주론 0.32ppm 검출
대만	3월	신선 딸기	농산물	624	성분 부적합	잔류 농약 티아클로프리드 0.52ppm 검출
대만	3월	신선 딸기	농산물	300	성분 부적합	잔류 농약 펜헥사마이드 0.04ppm 검출

출처 : 대만 식품약품관리국

2017년 1분기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보고서 기획 및 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발행일 2017.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처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농수산물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
02-6300-1673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